

2025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6년 3월 6일

본 공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3월 6일

NH-Amundi자산운용(주)

대표이사 길 정 섭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 | |
|------|----------------------------|----|
| I | 지배구조 일반 | 5 |
| II | 이사회 | 10 |
| III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30 |
| IV |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40 |
| V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50 |
| VI | 감사위원회 | 55 |
| VII | 리스크관리위원회 | 63 |
| VIII | 내부통제위원회 | 68 |
| IX |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74 |

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 | |
|----|-----------------|----|
| I | 보수위원회 | 76 |
| II | 보수체계 | 84 |

첨부

| | | |
|---|---------------------|-----|
| 1 | 정관 | 92 |
| 2 | 이사회 운영규정 | 123 |
| 3 | 지배구조 내부규범 | 133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와 결과의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 및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이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 기능이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인해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는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이사회는 57%가 사외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 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이 되어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 기능이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당사는 이사회는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과 관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이사회는 금융 분야 3명, 경제 분야 1명, 법률 분야 1명, 경영 분야 1명, 재무회계 분야 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정 배경이나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성원 간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 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융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내역 등 주요 업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 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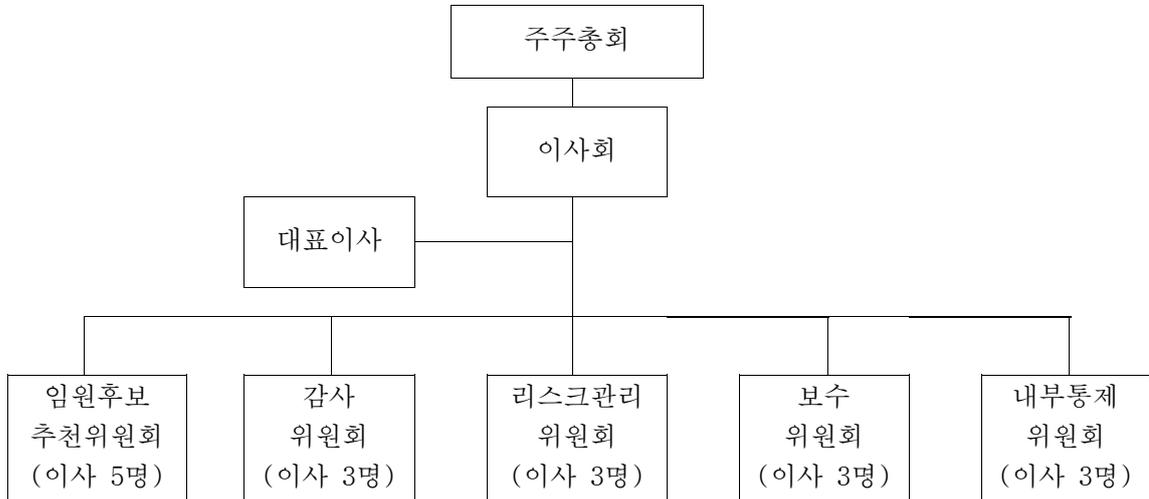
- 당사 사이트 주소: www.nh-amundi.com
- 협회 사이트 주소: www.kofia.or.kr

당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 필요 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2. 지배구조 현황

가. 조직도

(기준일: 2025.12.31)



나.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경영 실적 등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및 관련 내규에 따라 사업 전략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을 4명, 57%로 유지하여,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검증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재산, 경영진의 업무 집행과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승인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수위원회」는 적용 대상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 수립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기본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며, 임직원의 직업 윤리와 준법 정신을 조직 문화에 정착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과 변경,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책무구조의 작성과 변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지배구조 현황(요약)

(기준일: 2025.12.31)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사외이사 수/ 구성원 수) | 의장(위원장) (이름/상임· 사외·비상임 여부) | 관련 규정 |
|-------------------|--|--------------------------|-------------------------------------|--|
| 이사회 |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업무집행 감독 | 4/7 | 의장 안동현 (사외) | 정관 제30조~34조의2 이사회 운영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조~9조 |
|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 | 3/5 | 위원장 안동현 (사외)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규정 |
| 감사 위원회 | 경영진의 업무집행감사, 내부통제시스템 감사 및 평가 | 3/3 | 위원장 김병연 (사외) | 정관 제2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2조, 감사위원회 규정 |
| 리스크 관리 위원회 | 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리스크관리 전략 수립 및 승인 | 3/3 | 위원장 신영석 (사외)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3조,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
| 보수 위원회 | 적용대상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수립 | 3/3 | 위원장 김효정 (사외)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4조, 보수위원회 규정 |
| 내부통제 위원회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과 | 3/3 | 위원장 신영석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4조의2, |

| 내부기관 | 주요 역할 | 구성 (사외이사 수/ 구성원 수) | 의장(위원장) (이름/상임· 사외·비상임 여부) | 관련 규정 |
|------|-------|--------------------------|-------------------------------------|------------|
| | 전략수립 | | (사외) |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

라. 관련 규정

- 1) 첨부1: 정관
- 2) 첨부2: 이사회 운영규정
- 3) 첨부3: 지배구조 내부규범

1. 역할(권한과 책임)

가. 총괄

당사 이사회는 건전 경영을 기반으로 경영진이 책임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 활동의 기준, 절차, 방식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구체적 역할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계획과 경영실적 등을 보고받아 심의·의결하며, 정관과 관련 내규에 근거하여 사업전략, 주요 운영사항, 자본금 변동 등 회사의 중대한 경영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평가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관련규정: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6조, 「정관」 제33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다만, 수탁고, 수익, 비용 목표 등 구체적인 수립·평가에 관한 실무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며, 이사회는 이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경영계획은 2025년 10월 회사에서 초안 마련 후, 「2026년 경영계획(안)」이 이사회 의결안건에 반영되어 2025년 11월 24일 개최된 제9차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경영계획은 수탁고 목표 68조원, 당기순이익 목표 320억원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리테일 경쟁력 강화, ETF 사업 플랫폼 확립, 해외/대체 사업역량 제고입니다.

2) 정관 변경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관련규정: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6조,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2025년 7월 2일 개최된 제6차 이사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정관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3) 예산 및 결산 승인

이사회는 회사 예산(경영계획 포함) 및 결산(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기타 재무제표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당사 「정관」 제33조 제3항 제2호).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예산은 회사가 경영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가 이를 심의·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산 및 경영계획은 2025년 11월 7일 이사 워크숍 및 경영계획 사전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6년 경영계획(안)을 2025년 11월 24일 개최된 2025년 제9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회사는 2024년 결산기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24년 영업보고서(재무상태표 및 기타 재무제표 포함) 승인(안)」을 이사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2025년 2월 10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이사회에서 자산총계 1,629억원, 부채총계 228억원, 자본총계 1,401억원과 당기순이익 266억원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결산에 대해 2026년 2월 12일에 개최한 2026년 제2차 이사회에서 2025년 재무제표(자산총계 1,888억원, 부채총계 337억원, 자본총계 1,551억원, 당기순이익 392억원 등)이 포함된 2025년 영업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4)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영업양수도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관련규정: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6조, 「정관」 제33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이사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통제하여 회사 내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리스크관리규정」 제7조에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위험자본 한도를 2024년 12월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담당 부서는 해당 한도를 월간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 수준의 결정, 적정 투자 한도 및 손실 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 기준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의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더불어,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4조의2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내부통제의 기본방침과 전략수립,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조직문화의 정착 방안마련,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과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책무구조의 작성과 변

경,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6)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는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안정적인 경영 승계 절차 마련, 그리고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등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정관」 등으로 내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주주, 금융소비자,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 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 승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상기 규정의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지정하여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7) 이해 상충 행위 관리·감독

이사회는 이해 상충 행위 관리·감독을 위해 대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의결을 합니다. 이사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정관을 통해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에 관한 감독 조항을 설정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대주주·임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검토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성(이사)

가. 총괄

이사회는 총원 수는 당사 「정관」 제24조에 따라 3인 이상 7인 이내이며, 사외이사는 상법,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최소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2025년말 현재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사내 이사 2명(대표이사 1명, 부대표 1명),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입니다.

2025년말 현재 이사의 전문 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 분야 3명, 경제 분야 1명, 법률 분야 1명, 경영 분야 1명, 재무회계 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말 이사회 의장으로는 경제 분야 전문가이자 당사의 사외이사로 2024년 1월부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안동현 사외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2025년 7월에 선임되었습니다.

나. 구성원

1) 대표이사 길정섭

길정섭 대표이사는 약 30년 이상의 금융업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금융지주 에셋전략 부문장(2023년), 농협은행 자금운용 부문장(2022~2023년),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2020년~2021년)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선임일은 2025년 1월 1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임 기간은 12개월입니다.

2) 사내이사 니콜라 시몽

니콜라 시몽 이사는 당사의 상임이사이자 부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아문디자산운용 인도지역 담당대표 및 아문디 부동산 대표(2015년 ~ 2020년), 제네랄리 부동산 CIO(1996년 ~ 2003년) 등 다수의 금융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임일은 2020년 7월 13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임기간은 66개월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안동현

안동현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2003년 ~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2023년 ~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장(2023년 ~ 2025년) 등 다수의 금융 및 경제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임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임기간은 24개월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김병연

김병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4년 ~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2019년 ~ 현재),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23년 ~ 현재) 등 다수의 법률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임일은 2024년 6월 20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2026년 6월 19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임기간은 18개월이며,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 사외이사 신영석

신영석 사외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2014년 ~ 2023년), KB투자증권 부사장(2009년 ~ 2012년), 삼성선물 해외영업본부장(2005년 ~ 2008년) 등 다수의 금융 및 경영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임일은 2020년 5월 25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2026년 5월 24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임기간은 68개월이며,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 사외이사 김효정

김효정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2002년 ~ 현재)와 KPMG(1997년 ~ 2002년) 등에서 다수의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임일은 2024년 6월 20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2026년 6월 19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

임기간은 18개월이며,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 비상임이사 장용상

장용상 비상임이사는 충북 불정농업협동조합 조합장(2019년 ~ 현재) 외 다수의 경영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임일은 2025년 2월 1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임기간은 11개월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2025.12.31 기준)

| 성명 | 구분 | 직위 | 약력 | 선임일 (최초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재임 기간 | 담당 위원회 |
|-----------|----|---------------------------------------|---|---------------------------|-----------|----------|--------------------------|
| 김정섭 | 상임 | 대표이사 | - 前농협금융지주 에셋 전략 부문장 (부사장) - 前농협은행 자금운용 부문장(부행장) | '25.01.01 | '26.12.31 | 12개월 | - |
| 니콜라 시몽 | 상임 | 부대표 | - 前이문디 인도지역 대표 - 前이문디 부동산 사장 - 前제네랄리 부동산 CIO | '24.07.13 ('20.07.13) | '26.06.30 | 66개월 | 임추위 |
| 안동현 | 사외 | 이사회 의장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위원장 | - 現서울대학교 사회 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 現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 前 금융위원회 금융 발전심의회 위원장 - 前 한국자본시장 연구원 원장 - 前 금융위원회 신용 평가시장평가위원장 | '24.01.01 | '25.12.31 | 24개월 | 임추위 감사위 보수위 내통위 |
| 김병연 | 사외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現 건국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 現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 現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 '24.06.20 | '26.06.19 | 18개월 | 감사위 임추위 리관위 내통위 |

| 성명 | 구분 | 직위 | 약력 | 선임일 (최초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재임 기간 | 담당 위원회 |
|-----|-----|---------------------|--|-------------------------|-----------|----------|--------------------------|
| | | | - 現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 現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 前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 前 금융감독원 금융 투자인가 외부평가 위원회 위원 | | | | |
| 신영석 | 사외 |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장 | - 現 성균관대학교 경영 대학 객원교수 - 前 학교법인 일청학원 (경일대) 이사 - 前 성균관대 경영전문 대학원 교수 - 前 KB투자증권 부사장 - 前 삼성선물 해외영업 본부장 | '24.05.25 (20.05.25) | '26.05.24 | 68개월 | 리관위 감사위 보수위 내통위 |
| 김효정 | 사외 | 보수위원회 위원장 | - 現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 前 KPMG 회계사 | '24.06.20 | '26.06.19 | 18개월 | 보수위 임추위 리관위 |
| 장용상 | 비상임 | - | - 現충북괴산 불정농협 조합장 | '25.02.01 | '27.01.31 | 11개월 | 임추위 |

주) 임추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 감사위원회, 리관위: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 보수위원회, 내통위: 내부통제위원회

3. 활동내역

가.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는 총 10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6%로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가능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
건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해
당 부서장이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다양

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61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그 중 31건은 의결을 거쳤고, 30건은 보고 사항이었습니다.

나. 회의 개최내역

1) 2025년 제1차 이사회: 2025. 01. 23(목) 09:30 ~ 10:30

※ 안전통지일: 2025. 1. 16(목)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가결 여부 |
|---|----------|--------|-----|-----|-----|-----|-------|
| | 갈정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양석 | 김효정 | |
| 1. 이사 성명 | 갈정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양석 | 김효정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 (보고 제1호) ^{가)} 회사와 주요 주주 등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 포괄승인 허용여부 등 관련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의견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접수 |
| (보고 제2호) ^{나)}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2024년 하반기) | 특이사항 없음 | | | | | | 접수 |
| (보고 제3호)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 특이사항 없음 | | | | | | 접수 |
| (보고 제4호) ^{라)} 집합투자재산 평가 위원회 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 특이사항 없음 | | |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 |
| (의안 제1호) ^{마)}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비고>

가) 「회사와 주요 주주 등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 포괄승인 허용여부 등」 관련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의견을 이사회 보고

나) 2024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다) 2024년 하반기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라) 2024년 하반기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마) 비상임이사 선임(안) 및 보수(안)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2) 2025년 제2차 이사회: 2025. 02. 10(월) 10:30 ~ 11:30

※ 안건통지일: 2025. 2. 3(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김정섭 | 니콜라 시몽 | 인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1. 이사 성명 | 김정섭 | 니콜라 시몽 | 인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
| (보고 제5호) ^{가)} 2024년 사외/비상임이사 및 이사회(위원회) 평가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6호) ^{나)} 2024년 영업연속성 테스트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7호) ^{다)} 2024년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운영실태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8호) ^{라)} 2024년 내부회계 관리 제도 평가보고서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9호) ^{마)} 2024년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10호) ^{바)} 2024년 농협금융 그룹 내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현황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 | |
| (의안 제2호) ^{사)} 2024년 영업보고서(재무상태표 및 기타 재무제표 포함)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3호)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 | | | | | | |
| 위원 선임(안) | | | | | | | | |
| (의안 제4호) ^{자)} NH-Amundi JP모건 글로벌 고배당 펀드 출시를 위한 고유 재산 투자(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비고>

- 가) 2024년 사외/비상임이사 및 이사회(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 나) 2024년 영업연속성 점검결과 보고
-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라)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를 이사회 보고
-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24년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계획 수립, 시행 등의 업무수행 실적을 이사회 보고
- 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결과를 이사회 보고
- 사) 2024년 재무제표를 포함한 영업보고서 이사회 승인
- 아) 장용상 비상임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 자) NH-Amundi JP모건 글로벌 고배당 펀드 출시를 위한 고유재산 투자에 대한 승인

3) 2025년 제3차 이사회: 2025. 03. 25(화) 14:30 ~ 15:30

※ 안건통지일: 2025. 3. 18(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 | | | | | | |
| 1. 이사 성명 | 갈정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신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
| (보고 제11호) ^{가)} 2024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12호)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13호) ^{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14호) ^{라)}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 | | | | | | | |
| (보고 제15호) ^{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점검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 | |
| (의안 제5호) ^{바)} 2024년 배당(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6호) ^{사)} 2024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7호) ^{아)}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비고>

가) 2024년 감사결과를 이사회 보고

나) 회사가 운용하는 MMF 11개 펀드를 대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이사회 보고

다) 개방형펀드 57건을 대상으로 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이사회 보고

라) 2024년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개최결과를 이사회 보고

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점검결과를 이사회 보고

바) 2024년 양 주주(농협금융지주, Amundi)에 대한 배당(안) 이사회 승인

사) 202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확정에 따른 이사회 승인

아) 2024년 영업보고서, 임원 성과급 지급(안) 등의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소집

4) 2025년 제4차 이사회: 2025. 04. 08(화) 09:00 ~ 10:00

* 안건통지일: 2025. 04. 01(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갈정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의결안건 | | | | | | | | |
| (의안 제8호) ^{가)} 책무구조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비고>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제3항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 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책무구조도(안)을 이사회 승인

5) 2025년 제5차 이사회: 2025. 05. 21(수) 09:30 ~ 10:30

※ 안건통지일: 2025. 05. 14(수)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김장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1. 이사 성명 | 김장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
| (보고 제16호)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 | |
| (의안 제9호) ^{나)}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 전면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10호) ^{다)}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11호) ^{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비고>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을 이사회 보고(총 8개 분야, 153명)

나) 당사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전면 개정(안)을 승인

다)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 위험관리책임자: 김창환 / 자격검증 결과: 자격요건 충족

라) 집행간부(마케팅총괄 부사장) 선임 및 보수(안)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6) 2025년 제6차 이사회: 2025. 07. 02(수) 09:00 ~ 10:00

※ 안건통지일: 2025. 06. 24(수)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김장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1. 이사 성명 | 김장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
| (보고 제17호) ^{가)} 2025년 사외이사 소속 법인(비영리법인)의 기 부금 지원 내역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18호) ^{나)} 2023년 금융감독원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정기검사 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 제19호) ^{다)}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운영 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20호) ^{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2025년 2월말 기준)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21호) ^{마)} 보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22호) ^{바)}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5년 상반기)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23호) ^{사)}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2025년 상반기)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24호) ^{아)}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5년 상반기)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 | |
| (의안 제12호) ^{자)} 이사회 의장 선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13호) ^{차)} 임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14호) ^{카)} 정관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15호) ^{타)}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16호) ^{파)} 책무구조도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비고>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라 2025년 사외이사 소속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지원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

나) 2023년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 다) 2024년 연간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 라) 당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하는 MMF 10개 펀드를 대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분석의 주요 결과에 대한 보고
- 마) 보수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
- 바) 2025년 상반기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
- 사) 2025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
- 아) 2025년 상반기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
- 자) 이사회회장 재선임에 대한 승인(안동현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 임기 2025.07.11 ~ 2025.12.31)
- 차) 당사 「임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 승인(금융감독원 개선 사항 반영)
- 카) 당사 「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당사 「정관」 개정 에 대한 승인
- 타) 당사 「임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 및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책무구조도)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책무구조도 변경에 대한 승인(금융감독원 검토의견 및 개정요청 반영)

7) 2025년 제7차 이사회: 2025. 09. 08(월) 09:00 ~ 10:00

※ 안건통지일: 2025. 09. 01(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김성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1. 이사 성명 | 김성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2. 참석여부 | 불참 ^{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
| (보고 제25호) ^{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2025년 상반기)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 | |
| (의안 제17호) ^{다)} 지역활성화 투자 자펀드 (강동 그린에너지) 1호 및 2호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안)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18호) ^{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비고>

가) 외부업무로 인한 불참

나) 2025년 상반기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결과를 이사회보고

다) 지역활성화 투자 자펀드(강동그린에너지)에 대한 고유자금 투자(안)을 승인

라) 이사회 의장(사외이사) 직책수장 신설(안)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8) 2025년 제8차 이사회: 2025. 10. 02(목) 09:00 ~ 10:00

※ 안건통지일: 2025. 09. 25(목)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갈정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1. 이사 성명 | 갈정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2. 참석여부 | 참석 | 불참 ^{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
| (보고 제26호) ^{나)}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유동성 위기 상황분석 결과보고 (2025년 5월 말 기준)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보고 제27호) ^{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2025년 5월 말 기준)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 | |
| (의안 제19호) ^{라)} 주력산업(자동차 등) 대출형 기업지원 펀드의 운용사 선정 지원을 위한 고유재산 투자(안)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20호) ^{마)} 「NH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 3호」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안)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비고>

가) 외부업무로 인한 불참

나) 당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하는 개방형펀드 24건을 대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분석
주요 결과를 이사회 보고

다) 당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하는 MMF 10개 펀드를 대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분석의
주요 결과를 이사회 보고

라) 주력산업(자동차 등) 대출형 기업지원 펀드의 운용사 선정지원을 위한 고유재산 투자
(안)을 승인

마) 「NH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3호」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안)을 승인

9) 2025년 제9차 이사회: 2025. 11. 24(월) 09:00 ~ 10:00

※ 안건통지일: 2025. 11. 17(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김정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1. 이사 성명 | 김정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 | | | | | | | | |
| (보고 제28호) ^{가)} 2025년 사외이사 소속 법인(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지원내역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 | |
| (의안 제21호) ^{나)} 2026년 경영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22호) ^{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23호)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비고>

가) 2025년 사외이사 소속법인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지원내역 보고

나) 당사 「정관」 제33조에 따라 2026년 경영계획(안)을 승인

- 수탁고 목표: 68조원 / 당기순이익 목표: 320억원

다) 2026년 경영계획(안)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라) 당사 「정관」 제33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안) 승인

10) 2025년 제10차 이사회: 2025. 12. 15(월) 09:45 ~ 10:45

※ 안건통지일: 2025. 12. 8(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김정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1. 이사 성명 | 김정섭 | 니콜라 시몽 | 안동현 | 김병연 | 산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가)} | |
| 3. 보고안건 | | | | | | | | |
| (보고 제29호) ^{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보고 제30호) ^{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 | |
| (의안 제24호) ^{라)} 2026년 회사와 주요 주주 등 간의 거래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의안 제25호) ^{마)} 「하나로 TDF 2060」 펀드 출시를 위한 고유재산 투자(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의안 제26호) ^{바)} 당사 설정 공모펀드에 대한 2026년 고유재산 투자·회수 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의안 제27호) ^{사)} 「우리투자증권」 보유 지분 매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의안 제28호) ^{아)} 2025년 판매관리비 예산 전용(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의안 제29호) ^{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의안 제30호) ^{차)} 이사회 의장 선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의안 제31호) ^{카)} 책무구조도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가결 |

<비고>

가) 개인사정으로 불참

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총 8개 분야, 159명)

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결과에 대한 보고

(후보: 이종화. 임원 및 사외이사 선임 결격사유: 없음)

라) 2026년 회사와 주요주주 등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예비비 및 기타비용 항목을 미편성하고, 그 외는 2025년 거래한도 동일 적용)

마) 「하나로 TDF 2060」 펀드 출시를 위한 고유재산 10억원 투자에 대한 승인

바) 당사 설정 공모펀드에 대한 2026년 고유재산 투자·회수 계획에 대한 승인

사) 당사가 보유 중인 우리투자증권 보유 지분 매도에 대한 승인

- 아) 2025년 판매관리비 예산 전용에 대한 승인
- 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및 보수(안)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 차) 이사회 의장 선임에 대한 승인(안동현 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김병연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임기 2026.01.01 ~ 2026.06.19)
- 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책무구조도)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책무구조도 변경에 대한 승인(이사회 의장 변경 사항 반영)

4.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가. 이사회 평가

당사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가 법령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관이자 경영진의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이사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는 이사회의 역할과 구성(직무 수행, 개최 횟수의 적정성, 이사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등),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실제적인 토론 진행,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는 이사회 위원 전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은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고,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세부적인 업무는 이사회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당사 이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법령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사의 주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전년도 이사 활동내역을 기초로 내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자기평가(본인 평가), 상호평가(이사간 평가), 직원평가(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부문장 평가)로 구성되며, 이사로서의 경험과 지식,

이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도, 이사회 운영 및 회의에 대한 기여도 등이 평가지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이사회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2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검증 및 압축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사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자격요건이 있으며,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아래 세 가지 항목입니다.

- 회사의 목표와 비전 공유여부
-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 보유여부
- 공익성, 건전경영

또한,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역시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감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외이사로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 감사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여부

금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탐색 관리하고 후보군 관리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외이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사내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0%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25년 재임 임추위 위원>

| 성명 | 상임/비상임/사외 | 직위 |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 약력 |
|--------|-----------|-----|-----------------------|--|
| 안동현 | 사외 | 위원장 | ‘24.01.01 ~ ‘25.12.31 |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 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
| 김병연 | 사외 | 위원 | ‘24.06.20 ~ ‘26.06.19 |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
| 김효정 | 사외 | 위원 | ‘24.06.20 ~ ‘26.06.19 | - 김·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
| 장용상 | 비상임 | 위원 | ‘25.02.01 ~ ‘27.01.31 | - 불정농협 조합장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위원 - NH농협손해보험 발전위원 |
| 니콜라 시몽 | 상임 | 위원 | ‘20.07.13 ~ ‘26.06.30 | - NH-Amundi자산운용 부대표 - Amundi 인도지역 담당대표 - Amundi 부동산 대표 |

가. 후보 자격요건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시하였습니다. 임원후보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당사에서 정한 자격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에 정한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은 회사의 목표와 비전 공유 여부,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 보유 여부,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입니다. 동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 충실성 등을 갖춘 자입니다.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규정」 제9조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 보유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축소하고 후보자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통보하며,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임기만료, 사임 등으로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면 개시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추천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의거, 관리 중인 후보군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임 중인 사외이사를 재추천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한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통보하며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감사위원후보자는 위원회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격검증 등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고 이사회에 통보하며 추천된 후보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다.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0조는 이사에 대한 평가 및 결과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역할, 책임, 참여도 등의 항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는 연임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영성과 등의 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의 평가결과는 연임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활동내역 및 평가

가. 활동내역 개요

2025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 된 안건은 총 3개였으며 의결안건은 3개입니다. 또한, 3개의 의결안건 중 3개가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사외이사 후보자 총 159명, 최고경영자 후보자 총 87명의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동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이종화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나. 회의 개최내역

1) 2025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5. 05. 21(수) 09:20 ~ 09:30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 안동현 | 김병연 | 김효정 | 장용상 | 니콜라 시몽 | |
| 1. 이사 성명 | 안동현 | 김병연 | 김효정 | 장용상 | 니콜라 시몽 | |
| 2. 참석 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의안 제1호)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 2025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5. 12. 15(월) 09:00~09:15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 안동현 | 김병연 | 김효정 | 장운봉 | 니콜라 시몽 | |
| 1. 이사 성명 | 안동현 | 김병연 | 김효정 | 장운봉 | 니콜라 시몽 | |
| 2. 참석 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의안 제2호) 사외이사 후보군관리(안)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가결 |
| (의안 제3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안) ^{가)}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가결 |

<비고>

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이종화

다.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초, 직전 결산기 1년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구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충실성, 구성원의 적정성,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개최빈도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 이종화

1) 후보자 인적사항

| 성명 | 출생 년도 | 학력 | 경력 |
|-----|----------|--|---|
| 이종화 | 1960 |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하버드대 경제학 석사 - 고려대 경제학 석사 - 고려대 경제학 학사 | - 고려대 정년후석좌교수 -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2) 후보 제안자

가)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성명 | 직위 | 학력 | 경력 | 추천 후보 |
|-----|----------|--|--|----------|
| 김병연 | 사외 이사 | - 인디애나대 로스쿨 박사 - 인디애나대 로스쿨 석사 - 연세대 법학 석사 - 연세대 법학 학사 |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 이종화 |

나)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 후보제안자 김병연과 후보자 이종화는 당사 업무 외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3) 후보자 추천 사유

가)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이종화 후보자는 경제학 박사이며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장 겸 정책대학원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컬럼비아대학교 초빙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역임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당사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나) 후보자 추천경로

이종화 후보자는 2025년 12월 15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159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4) 금융회사 등과 관계

가)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나)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다)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5)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가) 소극적 요건

| 소극요건 | | 검증결과 | 충족이유 |
|---------------------------|------------|------|----------|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임원의 자격요건 | 적합 | 결격사유 없음 |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적합 | 결격사유 없음 |
| 지배구조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적합 | 경제·금융전문가 |

나)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은 물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 이사의 자격요건에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1) 전문성

후보자는 경제학 박사이며,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

하는 등 경제와 금융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 사외이사로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분히 겸비하고 있습니다.

(2) 직무공정성

후보자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으며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윤리성, 책임성

후보자는 오랜 교직 경험을 기반으로 경제·금융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려는 책임 의식이 투철하여,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충실성

후보자는 다년간의 학계 및 사외이사 경력을 통해 입증된 성실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여된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 본인 소명

후보자들에게 대해서 이력서, 임원선임심사표 등을 받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2025년 12월 15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종화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해당안건은 재

적위원 5명 중 4명 참석,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5.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이사 및 지원부서 등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에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이사, 지원부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다. 후보군 현황

1) 2025년 5월 21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분야별 후보군 현황

| 분야 | 금융 | 경영 | 경제 | 법률 | 재무회계 | 소비자보호 | IT | ESG | 합계 |
|------|-------|------|-------|-------|-------|-------|-------|-------|------|
| 후보군수 | 27명 | 10명 | 23명 | 27명 | 17명 | 12명 | 20명 | 17명 | 153명 |
| 비율 | 17.7% | 6.5% | 15.0% | 17.7% | 11.1% | 7.8% | 13.1% | 11.1% | 100% |

나) 추천경로별 후보군 현황

| 추천경로 | 지원부서 | 이사 | 합계 |
|-------|------|----|------|
| 후보군 수 | 148명 | 5명 | 153명 |
| 비율 | 97% | 3% | 100% |

2) 2025년 12월 15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분야별 후보군 현황

| 분야 | 금융 | 경영 | 경제 | 법률 | 재무 회계 | 소비자 보호 | IT | ESG | 합계 |
|----------|-------|------|-------|-------|----------|-----------|-------|-------|------|
| 후보 군수 | 30명 | 10명 | 26명 | 27명 | 17명 | 12명 | 20명 | 17명 | 159명 |
| 비율 | 18.9% | 6.3% | 16.4% | 17.0% | 10.7% | 7.5% | 12.6% | 10.7% | 100% |

나) 추천경로별 후보군 현황

| 추천경로 | 지원부서 | 이사 | 합계 |
|-------|------|----|------|
| 후보군 수 | 154명 | 5명 | 159명 |
| 비율 | 97% | 3% | 100% |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 내용

당사는 2025년 5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5월 21일 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이어 12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군을 12월 15일 개최된 제10차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7.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가. 지원부서 설치 현황

- 부 서 명: 인사담당부서
- 임직원수: 총 4명
- 담 당 자: 총괄-경영관리부문장(COO), 담당 - 경영지원실장

나.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 일자 | 운영내역 | 비 고 |
|-----------|----------------|---------------|
| '25.05.21 |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 '25.12.15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안) |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 활동내역

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1) 이사회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II. 이사회 → 3. 활동내역 → 나. 회의 개최내역 참조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III.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3. 활동내역 및 평가 → 나. 회의 개최내역 참조

3) 감사위원회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VI. 감사위원회 → 3. 활동내역 → 나. 회의 개최내역 참조

4) 리스크관리위원회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VII. 리스크관리위원회 → 3. 활동내역 및 평가 → 나. 회의 개최내역 참조

5) 내부통제위원회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VIII. 내부통제위원회 → 3. 활동내역 및 평가 → 나. 회의 개최내역 참조

6) 보수위원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I. 보수위원회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3) 회의 개최내역 참조

나.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안동현

상기 이사는 2024년 1월에 선임되어 20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총 10회에 참석하였고, 이사회내 위원회 총 20회 중 20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중 2회, 감사위원회 9회중 9회, 보수위원회 3회중 3회, 내부통제위원회 6회 중 6회)를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상기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16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김병연

상기 이사는 2024년 6월에 선임되어 20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총 10회에 참석하였고, 이사회내 위원회 총 21회 중 21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중 2회, 감사위원회 9회중 9회,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중 4회, 내부통제위원회 6회 중 6회)를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상기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169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신영석

상기 이사는 2020년 5월에 선임되어 20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총 10회에 참석하였고, 이사회내 위원회 총 22회 중 22회(감사위원회 9회중 9회,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중 4회, 보수위원회 3회중 3회, 내부통제위원회 6

회 중 6회)를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기업가치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상기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173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4) 사외이사 김효정

상기 이사는 2024년 6월에 선임되어 20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총 10회에 참석하였고, 이사회내 위원회 총 9회 중 9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중 2회,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중 4회, 보수위원회 3회중 3회)를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기업가치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상기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12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5) 비상임이사 장용상

상기 이사는 2025년 2월에 선임되어 20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총 8회에 참석하였고, 이사회내 위원회 총 2회 중 1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중 1회)를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기업가치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상기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73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6) 요약

| 구분 사외이사명 | 이사회 | | 이사회내 위원회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 | 리스크관리위원회 | | 보수위원회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 내부통제위원회 | | 활동시간가 |
|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실적 |
| 안동현 | 10 | 10 | 9 | 9 | - | - | 3 | 3 | 2 | 2 | 6 | 6 | 165 |
| 김병연 | 10 | 10 | 9 | 9 | 4 | 4 | - | - | 2 | 2 | 6 | 6 | 169 |
| 신영석 | 10 | 10 | 9 | 9 | 4 | 4 | 3 | 3 | - | - | 6 | 6 | 173 |
| 김효정 | 10 | 10 | - | - | 4 | 4 | 3 | 3 | 2 | 2 | - | - | 121 |
| 장용상 | 9 | 8 | - | - | - | - | - | - | 2 | 1 | - | - | 73 |

비고

가) 활동시간에는 이사회(위원회) 사전설명, 교육·연수 참여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가. 가입일: 2025. 07. 31

나. 보험사: 농협손해보험

다. 보험료: 40,950천원

라. 보험금: 20억원(연간 총 한도)

마. 자기부담금 설정금액: 해당사항 없음

3. 사외이사 교육, 연수

| 사외이사 성명 | 안동현 | 김병연 | 신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1. 교육, 연수 실시 내역 | | | | | |
| 가.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 2025년 경영계획 사전설명회(2025.11.7) - 당사 2026년 경영계획 상세설명 | | | |
|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사외이사 성명 | 안동현 | 김병연 | 신영석 | 김효정 | 장용상 |
|-------------------|---|-----|-----|-----|-----|
| 나.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2025.11.7) - 내부회계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 | | | |
|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다.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ESG 교육(2025.11.7) - ESG 규제화 Trend 및 기업 대응 현황 | | | | |
|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라.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내부통제 교육(2025.11.7) - 내부통제 목적과 기능, 법규 및 내규 체계 등 | | | | |
|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 누적 교육 시간 | 5.0 | 5.0 | 5.0 | 5.0 | 5.0 |

4.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가. 사외이사 안동현

- 1) 재직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2)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만원)

| 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4,200 | |
| 기본급 | 3,600 | |
| 상여금 | - | |
| 기타 수당 | 300 | 이사회 참석수당 30만원/10회 |
| | 300 | 이사회 의장 수당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100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100 | 기타 편익제공 |

나. 사외이사 김병연

- 1) 재직기간: 2024년 6월 20일 ~ 현재
- 2)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만원)

| 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3,900 | |
| 기본급 | 3,600 | |
| 상여금 | - | |
| 기타 수당 | 300 | 이사회 참석수당 30만원/10회 |
| | - |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다. 사외이사 신영석

- 1) 재직기간: 2020년 5월 25일 ~ 현재
- 2)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만원)

| 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3,900 | |
| 기본급 | 3,600 | |
| 상여금 | - | |
| 기타 수당 | 300 | 이사회 참석수당 30만원/10회 |
| | - |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라. 사외이사 김효정

가) 재직기간: 2024년 6월 20일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만원)

| 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3,900 | |
| 기본급 | 3,600 | |
| 상여금 | - | |
| 기타 수당 | 300 | 이사회 참석수당 30만원/10회 |
| | - |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마. 비상임이사 장용상

1) 재직기간: 2025년 2월 1일 ~ 현재

2)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만원)

| 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3,540 | |
| 기본급 | 3,300 | |
| 상여금 | - | |
| 기타 수당 | 240 | 이사회 참석수당 30만원/8회 |
| | - |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
| 업무활동비 | - | |
| 건강검진 지원 | - | |
| 차량제공 | - | |
| 사무실제공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5.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성명 | 최초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재임 기간 | 담당 위원회 | 직위 | 약력 |
|-----|-----------|-----------|----------|-----------------------|------------|------------------------------|
| 김종건 | ‘18.06.20 | ‘21.06.19 | 36개월 |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 감사위 위원장 | KG 이니시스 사외이사 |
| 신호주 | ‘19.01.01 | ‘21.12.31 | 36개월 | 임추위, 보수위, 감사위 | 임추위 위원장 | 노바렉스 비상임 고문 |
| 이혜민 | ‘18.06.20 | ‘24.06.19 | 72개월 | 임추위, 리관위, 보수위 | 보수위 위원장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
| 신영석 | ‘20.05.25 | ‘26.05.24 | 재직중 | 감사위, 보수위, 리관위, 내통위 | 리관위 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주승희 | ‘21.06.20 | ‘24.06.19 | 36개월 | 임추위, 리관위, 감사위 | 감사위 위원장 |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법학과 교수 |
| 송교직 | ‘22.01.01 | ‘23.12.31 | 24개월 | 임추위, 보수위, 감사위 | 임추위 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 안동현 | ‘24.01.01 | ‘25.12.31 | 24개월 | 임추위, 보수위, 감사위, 내통위 | 임추위 위원장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
| 김병연 | ‘24.06.20 | ‘26.06.19 | 재직중 |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내통위 | 감사위 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김효정 | ‘24.06.20 | ‘26.06.19 | 재직중 | 임추위, 보수위, 리관위 | 보수위 위원장 | 김앤장 공인회계사 |

6. 기부금 등 지원내역

| 사외이사 |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 | 기부한 금융 회사등 | 지원 내역 | |
|-------------|------------------|-----------------------|------------------|-------|--|
| | 법인등의 명칭 | 사외이사와 관계 | | 선임전 | 선임후 |
| | | | | | |
| 안동현 사외이사 | (재)서울대학교 발전재단 | 사외이사 소속학교의 재단법인 | NH농협 금융지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배경 청년 진로설계와 역량강화를 위한 기부 • 기부금액: 600만원 |
| | | | NH농협 은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배경 사회과학대학 리모델링 기금 • 기부금액: 2억2,500만원 |

7. 사외이사 평가

가.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임 중인 사외이사를 다시 추천하는 경우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6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이행 등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위해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나. 내부평가

1) 내부평가 개요

가) 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사회가 당사 이사회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평가 기준: 평가항목은 이사 자기평가, 직원평가, 상호평가, 이사회 참여, 교육참여(가점부여) 등으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별 전문성, 공정성(독립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 평가와 참석률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우수(A등급), 양호(B등급), 보통(C등급), 미흡(D등급) 4단계로 구분합니다.

- 다) 평가 절차: 이사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는 설문조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 평가, 교육 참여시간 평가를 평가합니다.
- 라)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위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관련 직원에 의한 평가, 참석률 평가 등 객관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가) 총론: 2025년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사외이사 모두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참여도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나)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2025년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 사외이사 모두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개선 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사외이사 | 평가결과 | | | | | 개선방안 |
|------|----------|-----|----------|-----|----|------|
| | 전문성 | 공정성 | 윤리성, 책임성 | 충실성 | 기타 | |
| 안동현 | 우수 (A등급) | | | | | - |
| 김병연 | 우수 (A등급) | | | | | - |
| 김효정 | 우수 (A등급) | | | | | - |
| 신영석 | 우수 (A등급) | | | | | - |
| 장용상 | 우수 (A등급) | | | | | - |

- 다) 외부평가: 해당사항 없음

8.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가.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으로는 이사회 일정 조정, 안건 자료 취합 및 발송 등 이사회 진행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0월 7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포함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2.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가. 일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지배구조법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2024년 11월 19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후보군 87명을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방법으로는 사내추천, 외부 자문기관 등의 추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위해 최고경영자 후보군 교육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임기만료 등으로 경영승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직무수행일 40일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후보군 중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종후보자 선발 절차는 먼저 기존에 보유한 후보군에 대하여 승계절차 개시 시점에서 소극적 자격요건을 재검증하여 대상 후보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평판조회를 참고하여 후보군을 압축합니다. 다음으로 면접을 통해 후보자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경영방침을 심사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임원후보추천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원회 및 이사회는 40일 이내로 최고경영자 후보를 심의·확정하고,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을 부의합니다.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가 선임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나.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3조 절차에 따라 사내이사 부대표가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압축 및 자격검증은 40일 이내에 수행하고, 경영승계절차 개시 후 40일 이내에 최종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3.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가. 소극적 요건

| 소극요건 | 충족여부 | 충족 이유 |
|--------------------------|------|---------|
| 가)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나)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길정섭 現대표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당사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법령은 지배구조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이며 관련 규정에서는 형벌 및 행정처분에 대해 면제 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은 회사의 목표와 비전 공유여부,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 보유여부,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입니다.

길정섭 대표이사는 약 30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했으며 농협금융지주 에셋전략 부문장, 농협은행 자금운용 부문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 본부장, 상호금융증권운용부 부장, 상호금융상품개발단 단장 등 자산운용분야의 주요 핵심 임원직을 역임하였으며, 임원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에 대한 장기 비전을 가지고 당사 성장에 기여하며 주주와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책임자로 평가되었습니다.

4.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가.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최고경영자 승계관련 주요 심의 의결 경과: 해당사항 없음

5.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내 경영승계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총괄하여 운영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지침에 따라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압축, 예비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총 87명의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경영관리부문 내 인사담당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후보군 현황

당사의 최고경영자 후보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후보군 수 | 백분율 | 기타 |
|----|-------|------|----|
| 내부 | 87 | 100% | - |
| 합계 | 87 | 100% | - |

| 추천경로 | 후보군 수 | 백분율 | 비고 |
|---------|-------|------|----|
| 기타-지원부서 | 87 | 100% | - |
| 합계 | 87 | 100% | - |

6.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

계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12월 13일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 11월 24일 9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점검 받았습니다.

7.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4조에 따라 경영관리부문 內 인사담당부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4조 상 승계업무 지원부서의 역할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검증, 그 밖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지원 등입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등 내역에 대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와 관련하여 연말 기준 총 87명의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 서 명: 인사담당부서
- 임직원수: 총 4명
- 담 당 자: 총괄-경영관리부문장(COO), 담당 - 경영지원실장

1. 역할(권한과 책무)

가. 총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뿐만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합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위원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의견을 진술합니다.

나. 구체적 역할

1)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즉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4년 11월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회사 외부감사인을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며, 회사는 동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재무제표 검토 등

「상법」 제447조 및 「정관」 제36조에 의거 이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보좌기구로 설치된 감사부서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제출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의 각 서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법령 또는 당사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추후 통보될 예정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및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그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기타

감사위원회는 감사부서장으로부터 내부감사 실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부서장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를 포함한 세부감사실시내역 및 감사결과,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 구성(감사위원회위원)

가. 총괄

감사위원회는 당사 정관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2025년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위원장)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다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서는 위원으로 최초 선임된 일자 순으로 합니다.

나. 구성원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김병연 | 사외 | 위원장 | '24.06.20 | '26.06.19 |
| 신영석 | 사외 | 감사위원 | '20.05.25 | '26.05.24 |
| 안동현 | 사외 | 감사위원 | '24.01.01 | '25.12.31 |

다.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해당 사항 없음. 감사위원회는 당사 「정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위원은 당사 「정관」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3. 활동내역

가.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는 감사위원의 활발한 참여 하에 총 9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부의 안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였으며,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보고받고 점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의결안 13건, 심의안 3건, 보고 12건 이었습니다.

나. 회의 개최내역

1) 2025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2025. 01. 22(수) 15:00 ~ 15:30

※ 안건통지일: 2025. 01. 15(수)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심의 제1호) 공시업무 이행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1호)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 2025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2025. 02. 06(목) 15:00 ~ 16:00

※ 안건통지일: 2025. 02. 03(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심의 제2호)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제3자 점검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2호) 2024년 내부감사보고서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3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준수여부 감사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2호)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3) 2025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2025. 03. 06(목) 10:50 ~ 11:30

※ 안건통지일: 2025. 02. 27(목)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심의 제3호)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4호) 20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3호) 2024년 결산감사보고서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4) 2025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2025. 03. 24(월) 14:00 ~ 14:20

※ 안건통지일: 2025. 03. 17(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4호)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5호) 2024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5) 2025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2025. 05. 21(수) 09:10 ~ 09:20

※ 안건통지일: 2025. 05. 09(금)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1. 위원 성명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보고 제5호) 금융지주 정기감사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6호)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6) 2025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2025. 06. 30(월) 10:30 ~ 11:00

※ 안건통지일: 2025. 06. 23(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1. 위원 성명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보고 제6호)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7호)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 평가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8호) 금융감독원 내부감사협의제도에 따른 특별점검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7호)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7) 2025년도 제7차 감사위원회: 2025. 09. 08(월) 08:40~08:50

※ 안건통지일: 2025. 09. 01(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1. 위원 성명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8호)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8) 2025도 제8차 감사위원회: 2025. 11. 24(금) 08:30 ~ 08:50

※ 안건통지일: 2025. 11. 17(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1. 위원 성명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보고 제9호) 경영관리부문 내부감사결과 보고서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10호) 세무조사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9호)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10호) 2024년도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9) 2025도 제9차 감사위원회: 2025. 12. 15(목) 09:15 ~ 09:40

※ 안건통지일: 2025. 12. 08(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1. 위원 성명 | 김병연 | 신영석 | 안동현 | |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참석 | 참석 | 참석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심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보고 제11호)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 계획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12호) 내부회계관리 운영평가 계획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11호)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12호) 2026년도 외부감사 보수계약(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13호) 2026년 연간 내부감사 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4.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기구로 감사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부서는 감사실시,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감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을 하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1. 역할(권한과 책무)

가. 총괄

당사는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 기본정책 등 주요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구체적 역할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과 위험 현황을 고려하여 회사의 전체 위험자본한도 및 위험 유형별로 위험자본한도를 배분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활동이 위험자본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4년 12월 12일에 2025년 위험자본한도 설정의 건을 상정하여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을 의결하였습니다.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당사는 투자 수준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험자본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국채, 통안채, 은행 예치 등 안전자산에만 투자를 허용하고, 위험자산 투자 시에는 별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총괄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변화 및 제도변경 등에 맞춰 적절하게 기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기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2.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가.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임합니다.

2025년 말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모두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 시까지로 합니다.

나. 구성원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신영석 | 사외 | 위원장 | '20.05.25 | '26.05.24 |
| 김병연 | 사외 | 위원 | '24.06.20 | '26.06.19 |
| 김효정 | 사외 | 위원 | '24.06.20 | '26.06.19 |

3. 활동내역 및 평가

가. 활동내역 개요

2025년 중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21개였으며 결의안건 1개, 보고안건은 20개입니다. 1개의 결의안건 중 1개가 가결되었습니다.

나. 회의 개최내역

1) 제2025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25. 03. 14(금) 10:30 ~ 11:30

※ 안건 통지일: 2025. 03. 05(수)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신영석 | 김병연 | 김효정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가결여부 |
|---|----------|------|
| (보고 제1호) 리스크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제24기 제1차) | 특이사항 없음 | 접수 |
| (보고 제2호) 고유재산 운용현황 점검 결과 보고 (2024년 12월 말) | 특이사항 없음 | 접수 |
| (보고 제3호) 고유재산 위험자본한도 소진현황 보고 (2024년 10월, 11월, 12월 말) | 특이사항 없음 | 접수 |
| (보고 제4호)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2023년 11월 말 기준) | 특이사항 없음 | 접수 |
| (보고 제5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2024년 11월말 기준) | 특이사항 없음 | 접수 |
| (보고 제6호) 운영리스크 현황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2) 제2025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25. 06. 20(금) 16:30 ~ 17:30

※ 안건 통지일: 2025. 06. 12(목)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신영석 | 김병연 | 김효정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보고 제7호) 리스크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제24기 제2차, 제3차)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8호) 고유재산 운용현황 점검 결과 보고 (2025년 3월 말)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9호) 고유재산 위험자본한도 소진현황 보고(2025년 1월, 2월, 3월 말)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 | | |
|----|--|---------|----|
| | (보고 제10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2025년 2월 기준) | 특이사항 없음 | 접수 |
| 4. | 의결안건 | - | |

3) 제 2025 년도 제 3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25. 09. 30(화) 10:00 ~ 11:00

※ 안건 통지일: 2025. 09. 18(목)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신영석 | 김병연 | 김효정 | |
| 1. 위원 성명 | 신영석 | 김병연 | 김효정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보고 제11호) 리스크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제24기 제4차) | 특이사항 없음 | | 접수 |
| | (보고 제12호) 고유재산 운용현황 점검 결과 보고(2025년 6월 말) | 특이사항 없음 | | 접수 |
| | (보고 제13호) 고유재산 위험자본한도 소진현황 보고(2025년 4월, 5월, 6월말) | 특이사항 없음 | | 접수 |
| | (보고 제14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유동성 위기 상황분석 결과 보고 (2025년 5월 말 기준) | 특이사항 없음 | | 접수 |
| | (보고 제15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고 (2025년 5월 말 기준) | 특이사항 없음 | | 접수 |
| | (보고 제16호) 운영리스크 현황 보고 (2025년 상반기) | 특이사항 없음 | | 접수 |
| 4. | 의결안건 | - | | |

4) 제2025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2025. 12. 22(월) 10:00 ~ 11:00

※ 안건 통지일: 2025. 12. 12(금)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신영석 | 김병연 | 김효정 | |
| 1. 위원 성명 | 신영석 | 김병연 | 김효정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보고 제17호) 리스크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제24기 제5차)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18호) 고유재산 운용현황 점검 결과 보고(2025년 9월 말)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19호) 고유재산 위험자본한도 소진현황 보고(2025년 7월, 8월, 9월말)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20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기 상황분석 결과 보고 (2025년 8월 말 기준)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1호) 2026년 고유재산 위험자본 한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다. 평가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초 전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역할 수행의 충실성, 위원 구성의 전문성, 위원회 개최빈도,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1. 역할(권한과 책무)

가. 총괄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대표이사과 임원이 지배구조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회사는 2024년 10월 31일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정 전 지배구조법령에 근거한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전 「내부통제위원회」를 「내부통제협의회」로 개편하여 유지).

나. 구체적 역할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경영을 통해 고객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내부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2) 내부통제 추진 업무 심의·결의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협의회 지침의 제정 및 개정과 책무구조도 마련 및 변경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임원과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2. 구성(내부통제위원회위원)

가. 총괄

당사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 이사로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2025년 말 현재 내부통제위원회는 총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로 합니다.

나. 구성원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신영석 | 사외 | 위원장 | '20.05.25 | '26.05.24 |
| 김병연 | 사외 | 위원 | '24.06.20 | '26.06.19 |
| 안동현 | 사외 | 위원 | '24.01.01 | '25.12.31 |

3. 활동내역 및 평가

가. 활동내역 개요

2025년 중 내부통제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13개의 안건이 부의되었으며, 이 중 결의안건은 6개, 보고안건은 7개입니다. 결의안건 6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나. 회의 개최내역

1) 제2025년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2025. 03. 06(목) 10:20 ~ 11:10

※ 안건 통지일: 2025. 02. 25(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신영석 | 김병연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보고 제1호) 채무구조도 마련 진행 경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1호)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의안 제2호) 내부통제위원회 지침 전면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 제2025년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 2025. 04. 07(월) 10:00 ~ 11:10

※ 안건 통지일: 2025. 03. 31(월)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신영석 | 김병연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보고 제2호)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3호) 채무구조도(안)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3) 제2025년도 제3차 내부통제위원회: 2025. 05. 14(월) 10:00 ~ 11:00

※ 안건 통지일: 2025. 05. 07(수)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신영석 | 김병연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4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전면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조건부가결 |

4) 제2025년도 제4차 내부통제위원회: 2025. 06. 24(화) 15:00 ~ 16:00

※ 안건 통지일: 2025. 06. 05(목)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신영석 | 김병연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보고 제3호) 2023년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4호) 2025년 1/4분기 내부통제 점검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5호) 책무구조도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제2025년도 제4차 내부통제위원회 속행회의: 2025. 07. 02 (화) 08:40~08:55

5) 제2025년도 제5차 내부통제위원회: 2025. 09. 24(화) 10:00 ~ 11:00

※ 안건 통지일: 2025. 09. 17(수)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신영석 | 김병연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보고 제5호) 2025년 2/4분기 내부통제 점검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6) 제2025년도 제6차 내부통제위원회: 2025. 12. 17(화) 10:00 ~ 11:00

※ 안건 통지일: 2025. 12. 11(목)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신영석 | 김병연 | 안동현 | |
| 1. 위원 성명 | 신영석 | 김병연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보고 제6호) 2025년 3/4분기 책무 관리조치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보고 제7호) 2025년 3/4분기 내부통제 점검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 | | | 접수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6호) 내부통제위원회 지침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다. 평가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근거하여, 내부통제위원회가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회사가 내부통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전년도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평가지표에는 내부통제 관련 심의·의결 및 관리·점검·평가 수행의 충실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의 자격 및 경험의 적정성 등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과 관련된 2개 항목과, 회의 개최 횟수 적정성,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여부, 자료·정보 제공의 충실성 및 적시 보고 여부 등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적정성과 관련된 3개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는 소 위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되며, 모든 평가 절차는 이사회가 주관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점 구간별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의 4단계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IX**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2025년 중 당사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행정지도 등의 조치사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 제1항을 그 근거로 하여 2016년 10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이사 임기까지입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진행경과,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성

가.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하고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계·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3인 모두 사외이사로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여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의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장인 김효정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한·불상공

회의소 이사, 토탈이수오일코리아 감사 역임 등 재무 분야에 최고의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영석 사외이사는 경영학 박사이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KB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에서 임원을 역임해 보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시장 전문성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하여 보수위원회 위원으로서 월등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동현 사외이사는 경영학 박사이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등을 역임해 경제, 경영, 재무 및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수위원회 위원으로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현재 신영석(재무전문가) 사외이사, 김효정(재무전문가) 사외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외이사로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직명 |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 약력 |
|-----|-----|--------------------------------|------------------------------------|--|
| 김효정 | 위원장 | 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여 | - 김·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 KPMG Korea - KPMG Melbourne |
| 신영석 | 위원 | 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여 |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 교수 - KB투자증권 부사장 - 삼성증권 법인사업본부 상무 |
| 안동현 | 위원 | 여 | 여 |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 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

나. 구성원

2025년말 기준 당사 보수위원회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김효정 | 사외 | 위원장 | 2024.06.20 | 2026.06.19 |
| 신영석 | 사외 | 위원 | 2020.05.25 | 2026.05.24 |
| 안동현 | 사외 | 위원 | 2024.01.01 | 2025.12.31 |

3. 권한과 책임

가. 총괄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회사의 외부기관에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5년 6월 17일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 보수 체계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7일에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 체계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의결에 따라 단기성과급(40%~60%)은 당해연도에 일시 지급하고 장기이연성과급(40%~60%)은 연도별 장기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3년간 이연지급하며 성과급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6년 3월 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

일 20일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라.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5년 6월 17일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보수체계에 관한 내용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체계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총 보수 중 성과보수의 비중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며, 성과보수의 평균 이연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의 총보수 중 기본연봉에 대한 성과보수의 비율을 결의하였으며,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운영기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마.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당사 「보수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 등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보수위원회규정」은 2016년 10월 26일 개최된 제7차 이사회에서 의결, 2017년 2월 의결사항을 개정하였고 2023년 11월 27일 제8차 이사회에서 임원의 용어정의 조항을 개정한 후 2025년까지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바.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 에 대한 상시점검

「보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보수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어있으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소속 이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보수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보수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적정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성과보수와 연동되는 성과평가 측정지표로 재무성과 관련 항목(당기순이익 등)과 기업가치 관련 항목(리스크관리실태평가)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수

체계가 재무상황 및 리스크관리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사.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6년 3월 6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1) 국내: 회사 내 모든 부문에 적용 예정
- 2) 해외: 해당자 없음

자.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에 보수위원회가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상체계를 수립하게 되어있으며, 2025년 6월 17일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의 변동보상의 대상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부대표, 부사장, 상무, 이사대우를 임원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자산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부문장급을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2025년 12월말 기준 임원은 대표이사 1명, 부대표 1명, 부사장, 상무 등 총 8명이며,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총 3명입니다.

또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의 단기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보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수 있는 자산운용역 직원을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일반 성과급 외 펀드성과보수에 따른 성과급 지급시에는 이연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류 | 인원수 | 직명 |
|--------------------------|-----|--|
| 임원 ^{주1)} | 8 | 대표이사, 부대표, 부사장, 선임운용부부장, 경영관리부부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2)} | 3 | 운용담당 부부장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대상자 | 105 | 자산운용역 |

주1) 2025.12월말 기준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원을 대상으로 작성

주2) 2025.12월말 기준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상자 기준으로 작성

4.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가.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현재 김효정 사외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있으며, 회의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5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나. 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보수위원회는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 회의 개최내역

1) 제2025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2025. 03. 06(목) 10:00 ~ 10:15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효정 | 신영석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의안 제1호) 2024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안) | 동의 | 동의 | 동의 | 가결 |

2) 제2025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2025. 03. 24(월) 10:00 ~ 10:30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효정 | 신영석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2호) 2024년 대표이사 성과평가 결과(안) | 동의 | 동의 | 동의 | 가결 |
| (의안 제3호) 2024년 집행간부 및 업무집행책임자 성과평가 결과(안) | 동의 | 동의 | 동의 | 가결 |
| (의안 제4호) 2024년 대표이사 성과급 지급(안) | 동의 | 동의 | 동의 | 가결 |
| (의안 제5호) 2024년 집행간부 및 업무집행책임자 성과급 지급(안) | 동의 | 동의 | 동의 | 가결 |

3) 제2025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2025. 06. 17(화) 15:00 ~ 15:30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효정 | 신영석 | 안동현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의안 제6호) 2025년 대표이사 성과평가(안) | 동의 | 동의 | 동의 | 가결 |
| (의안 제7호) 2025년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 성과평가방안(안) | 동의 | 동의 | 동의 | 가결 |
| (의안 제8호) 임원 장기평가(안) | 동의 | 동의 | 동의 | 가결 |
| (의안 제9호) 임원 보수체계(안) | 동의 | 동의 | 동의 | 가결 |
| (의안 제10호) 2025년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안) | 동의 | 동의 | 동의 | 가결 |

라. 평가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초, 직전 결산기 1년간 보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보수위원회의 직무수행 충실성, 구성원의 적정성,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개최빈도, 사전 안전제공수준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관련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주요사항

가.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1)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당기순이익, 총수탁고 성장률, 총영업이익경비율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리스크관리실태평가, 사고예방, 윤리지수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의 경우 계량평가로는 전사 재무성과(당기순이익 등), 수탁고 목표, 펀드수익률 등 소관부문 관련 KPI를 평가하며 비계량평가로는 핵심역량평가 등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펀드수익률 지표, 리서치 MP 지표 등과 회사의 전체 수탁고 및 목표이익 달성률 등 회사 KPI를 개인성과에 반영하여 회사의 전체 성과를 감안한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성과측정 지표로 회사전체 목표이익, 펀드수익률, 수탁고 목표 등의 재무지표를 활용하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는 해당 임원의 개별 KPI 및 비계량부문의 핵심역량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개인 보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펀드수익률 지표, 리서치 MP 지표 등과 회사 및 부문의 수탁고와 손익 목표 달성률을 종합적으로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이를 보수 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1)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 장기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이연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평가지 1년 성과를 40%~50%, 3년 성과를 50%~60% 반영하여 성과급 총액 산정 시 이미 장기성과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이연지급성과급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이연지급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연된 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이연지급액은 당해연도 평가지 총 한도를 정하고 지급미확정으로 운영하며 미확정 금액은 매년 장기성과평가를 통해 지급여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1)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수액 중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의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연봉은 고정보상액으로, 성과급은 전액 변동보상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전액 현금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해당사항 없음

6)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성과보수액 중 단기성과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성과급 총지급 한도 결정 및 이연규모를 설정하고, 장기성과평가를 통해 매 이연연도별 이연분의 지급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단기성과평가와 장기성과평가를 같이 반영한 당해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성과급 총지급한도 결정 및 이연규모를 설정하고 손실 발생, 법률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이연분의 지급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연지급액은 투자성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3년 동안 이연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성과급은 전액 변동보상액으로 40% 즉시지급, 60% 3년간 이연지급
- 대표이사 외 임원: 성과급은 전액 변동 보상액으로 55% 즉시지급, 45% 3년간 이연지급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급은 전액 변동 보상액으로 60% 즉시지급, 40% 3년간 이연지급

라.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1)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와 연계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의 임금체계는 직무가치 및 특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도록 하며 제수당을 기본연봉 항목으로 통합함으로써 임금체계를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해당사항 없음

아.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해당사항 없음

자.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2. 보수 세부사항

가. 임직원 총보수

(단위: 명, 억원)

| 구분 | 임직원보수총액 ^{주1)} (A)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주2)} (B) | | 임직원수 ^{주3)} (C) | 임직원 평균보수 (A/C) |
|-----------------|-------------------------------|---------------------------------|---------|----------------------------|----------------------|
| | | | 비율(A/B) | | |
| 전년도 (2024년) | 273.7 | 356.6 (2023년) | 77% | 210 | 1.3 |
| 당해년도 (2025년) | 288.0 | 372.2 (2024년) | 77% | 216 | 1.3 |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

[예시: 당해연도가 2024년인 경우 2023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주3) 임직원수(C)는 연평균 임직원수 기준으로 기재

나.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억원)

| 구분 | | 임원 | | 직원 |
|-----------------|-------|------|-------|-------|
| | | 등기임원 | 비등기임원 | |
| 당해년도 (2024년) | 보수총액 | 11.3 | 16.6 | 245.7 |
| | 성과보수액 | 4.0 | 6.4 | 62.4 |
| 당해년도 (2025년) | 보수총액 | 11.5 | 16.7 | 260.0 |
| | 성과보수액 | 4.2 | 6.9 | 68.1 |

다. 직급, 근속연수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임직원 1인당 평균액)

(단위: 억원)

| 구분 | | 임원 | 직원 | | | | | | 임직원 평균 보수 |
|-----------------|----|-----|----------------------|-------------------|-----------------------|----------------------|-------------------|-----------------------|-----------------|
| | | | 팀장 미만 | | | 팀장 이상 | | | |
| | | | 근속 연수 5년 미만 | 근속 연수 5~10년 | 근속 연수 10년 이상 | 근속 연수 5년 미만 | 근속 연수 5~10년 | 근속 연수 10년 이상 | |
| 전년도 (2024년) | 남성 | 1.3 | 0.8 | 1.1 | 1.2 | 1.5 | 2.0 | 1.9 | 1.3 |
| | 여성 | 0.6 | 0.6 | 0.8 | 0.8 | 1.5 | 1.0 | 1.3 | 0.8 |
| | 전체 | 1.2 | 0.7 | 0.9 | 1.0 | 1.5 | 1.9 | 1.7 | 1.1 |
| 당해년도 (2025년) | 남성 | 1.4 | 0.7 | 1.0 | 1.3 | 1.5 | 1.8 | 2.2 | 1.2 |
| | 여성 | 1.3 | 0.6 | 0.9 | 0.9 | 1.2 | 2.0 | 1.4 | 0.8 |
| | 전체 | 1.4 | 0.7 | 0.9 | 1.1 | 1.4 | 1.8 | 2.0 | 1.0 |

주1. 개별 항목은 직급, 근속연수 및 성별에 따른 1인당 평균보수액(보수총액/임직원수)을 기재

주2. 개별 항목 계산 시 임직원 수는 해당년도에 1회 이상 보수를 지급받은 총 임직원 수 기준으로 기재

3.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가.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 구분 | 수급자수 ^{주1)} | 기본연봉 ^{주2)} | 성과보수액 ^{주2)} | | |
|-------|---------------------|-------------------------|----------------------|--------|-----|
| | | | | 이연지급대상 | |
| 2024년 | 임원 | 13 | 16.6 | 10.8 | 4.5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3 | 6.3 | 3.8 | 1.5 |
| 2025년 | 임원 | 작성 중 (2026년 4월 공시예정) |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 없이 지급되면 「기본연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나.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 성과보수액 | 성과보수액 | | | |
|-------|---------------|-------------------------|-------------------|---------------------------|-------------------|
| | | 현금 | 주식 ^{주1)} | 주식연계 상품 ^{주2)} | 기타 ^{주3)} |
| 2024년 | 임원 | 10.8 | 10.8 | -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3.8 | 3.8 | - | - |
| 2025년 | 임원 | 작성 중 (2026년 4월 공시예정) |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주1) 주식: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

주2) 주식연계상품: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다.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 | 이연보수액 | | |
|-------|---------------|-------------------------|------|-------|
| | | | 지급확정 | 지급미확정 |
| 2024년 | 임원 | 13.0 | 4.1 | 8.9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4.4 | 1.3 | 3.1 |
| 2025년 | 임원 | 작성 중 (2026년 4월 공시예정)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주 1. 이연보수액: 해당년도 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
 주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 3. 2025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2025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라.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 | 이연보수액 | | | | |
|-------|---------------|-------------------------|------|------------|----|---|
| | | 현금 | 주식 | 주식연계 상품 | 기타 | |
| 2024년 | 임원 | 13.0 | 13.0 | - | -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4.4 | 4.4 | - | - | - |
| 2025년 | 임원 | 작성 중 (2026년 4월 공시예정) | |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마.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원)

| 구분 | | 이연보수액 | | | | | |
|-------|---------------|-------------------------|------|------|------|-----|---|
| | | t기 | t-1기 | t-2기 | t-3기 | 이전 | |
| 2024년 | 임원 | 13.0 | 4.5 | 4.4 | 2.9 | 1.2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4.4 | 1.5 | 1.2 | 1.2 | 0.5 | - |
| 2025년 | 임원 | 작성 중 (2026년 4월 공시예정) | | |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

- 주 1.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5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5년(t기) 발생분, 2024년(t-1기) 발생분, 2023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바.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억원)

| 구분 |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 직접적 조정 ^{주2)} | 간접적 조정 ^{주3)} |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
|-------|-----------------------------|--------------------------|--------------------------|--|
| | | | | |
| 2024년 | 임원 | - | -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
| 2025년 | 임원 | 작성 중 (2026년 4월 공시예정)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주 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 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 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주 5) 2025년도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 중인 바 고정보상액 및 변동보상액에 대한 세부정보는 2026년도 1/4분기 이후 별도로 공시할 예정

사.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명, 억원)

| 구분 | 수급자수 | 퇴직보수액 |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 (2024년) | 임원 | -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25년) | 임원 | - |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 1)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주식회사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NH-AMUNDI ASSET MANAGEMENT CO., LTD.

2003.1.27 제정 established on Jan. 27, 2003
2003.2.14 개정 amended on Feb. 14, 2003
2003.7.24 개정 amended on July 24, 2003
2005.6.23 개정 amended on June 23, 2005
2005.10.11 개정 amended on Oct 11, 2005
2006.6.23 개정 amended on June 23, 2006
2007.8.4 개정 amended on August 4, 2007
2009.3.30 개정 amended on March 30, 2009
2012.12.13 개정 amended on December 13, 2012
2013.9.12 개정 amended on September 12, 2013
2015.08.01 개정 amended on August 1, 2015
2015.09.21 개정 amended on September 21, 2015(Tel: 3753)
2016.05.01 개정(Amended)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Tel 3754)
2016.10.28 개정(Amended)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Tel 3754)
2018.06.19 개정(Amended)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Tel 3754)
2018.12.06 개정(Amended)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Tel 3756)
2019.09.26 개정(Amended) 경영지원부문 경영기획팀(Tel 3759)
2022.03.31 개정(Amended) 경영관리부문 경영기획팀(Tel 3759)
2022.05.24 개정(Amended) 경영관리부문 경영기획팀(Tel 3755)
2024.10.31 개정(Amended) 준법감시실(Tel 3720)
2025.07.02 개정(Amended) 준법감시실(Tel 3720)

제1장 총 칙

CHAPTER 1 GENERAL

제1조 (회사명)

회사명은 국문으로는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NH-Amundi Asset Management Co., Ltd.라 한다(이하 “회사” 라 한다).

Article 1 (Company Name)

The name of the Company shall be “*NH-Amundi Jasan Woonyong Chusikhoesa*” in Korean and “NH-Amundi Asset Management Co., Ltd.” in Englis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제2조 (목적)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10.31 개정)

1. 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무
2.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무(인수업 제외)(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3. 투자자문업무
4. 투자일임업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7.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
8. 상기 각 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 및 활동

② 위 제1항에 언급한 사업 외에도, 회사는 필요할 경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Article 2 (Objective)

① The objectives of the Company will be to engage in the following business activities: (2024.10.31 Amended)

1.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of all types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2. Investment and trading business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excluding underwriting business)(limited to investment and trading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managed by the company);
3.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4.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ment business;
 5. Business as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for a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
 6. Business as a General Partner of institutional-only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
 7. Other business permitted by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8. Engaging in any of the businesses or activities incidental to the foregoing items of 1 through 7.
- ② In addition to the businesses mentioned above in ①, the Company may engage in other businesses upon obtaining, if so required, approval for such other businesses from the relevant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점과 기타 영업소를 적당한 장소에 둘 수 있다.

Article 3 (Location of Offices)

The Head Office of the Company shall be locate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Korea”). Branch offices and other business offices may be established at any suitable places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제4조 (통지의 방법)

- ① 회사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모든 통지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별통지로 행한다.
- ② 개별통지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자연인이나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아야 할 각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에 의해 배달되는 서신에 의하여, 대한민국 외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 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 항공 우편이나 항공 커리어 또는 이에 의하여 확인되는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전보로 배달된 서신에 의하여 통고함으로써 행한다.
- ③ 회사의 공고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매일경제신문]에 그 공고를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Article 4 (Method of Giving Notice)

- ① All notices by the Company to shareholders and directors shall be given by “Personal Notice” as prescribed by law.

- ② “Personal Notice” shall be given by notifying each person required to be notified through a letter delivered by registered mail or by hand delivery to natural persons residing in Korea or juridical persons established in Korea, and through a letter delivered by registered airmail or air courier, or through facsimile transmission, telex or cable confirmed by letter sent by registered airmail or air courier, to natural persons residing or juridical persons established outside Korea.
- ③ Public notices by the Company shall be given by inserting them in [name of newspaper, (e.g. Maeil Business Newspaper)], a daily Korean newspaper published in Seoul, Korea.

제2장 주 식 CHAPTER 2 SHARES

제5조 (주식수)

- ①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총수(이하 “수권주식” 이라 한다)는 이천사백만 (24,000,000)주로 한다.
- ② 설립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백만(6,000,000)주로 한다.

Article 5 (Number of Shares)

- ① The total number of shares which the Company is authorized to iss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uthorized Shares”) is twenty four million (24,000,000) shares.
- ② The total number of the shares to be issued by the Company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shall be six million (6,000,000) shares.

제6조 (주식의 액면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액면가는 오천(5,000)원으로 한다.

Article 6 (Par Value of the Share)

The par value of a share to be issued by the Company shall be five thousand (5,000) Korean Won.

제7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주권은 기명식으로 하고, 회사는 일(1)주권, 일십(10)주권, 일백(100)주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 일십만(100,000)주권, 일백만(1,000,000)주권 및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그 외의 단위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Article 7 (Class of Shares and Share Certificates)

- ① The shares to be issued by the Company shall be common shares and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exclusion of voting rights.
- ② Share certificates shall be in a registered form, and shall be issued by the Company in denominations of the one (1), ten (10), one hundred (100), one thousand (1,000), ten thousand (10,000), hundred thousand (100,000), one million (1,000,000) shares and/or such other denomination a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제7조의2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Article 7-2(Particulars and Number of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Exclusion of Voting Rights)

- ① Different classes of shares to be issued by the Company shall be shares having no voting rights
- ② The total number of different classes of shares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not exceed a quarter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제8조 (신주인수권)

회사의 주주는 주주간 계약서의 해당 조문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Article 8(Premptive Right)

The Company's shareholders shall have the preemptive right to subscribe for new shar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hareholders Agreement.

제8조의2 (신주 발행)

- 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0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제8조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그 행사기간은 당해 외국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을 취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부 내지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수리 등을 마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되어야 한다.

Article 8-2 (Issuance of New Shares)

- ① Notwithstanding Article 8 above, if it is deemed necessary to achieve the Company's business purpos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or improvement of the Company's financial condition, the Company may allocate new shares, pursuant to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set forth in Article 20, to persons other than the existing shareholders or to an existing shareholder, without regard to the preemptive rights of other existing shareholders as set forth under Article 8 above.
- ②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in the event that a foreign shareholder has the right to subscribe to new shares, the time period in which it may exercise such right shall be such period as to give such shareholder sufficient time to obtain any necessary license, approval, registration or acceptance of a report from a government or regulatory agency required to exercise such right or to acquire the new shares through the exercise of such right.

제9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 시 기준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Article 9 (Base Date for Calculation of Dividends for New Shares)

When the Company issues new shares by rights issue, bonus issue or stock dividend, with respect to the distribution of dividends on new shares, the new share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ssued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new shares are issued.

제10조 (명의개서 및 질권 등록)

- ① 양도, 매각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하고자 하는 주주는 당해 주권과 함께 회사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양도, 매각,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주식의 이전 이외에 유증, 상속,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를 개서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당해 주권과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을 등록하거나 말소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당해 주권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서류를 검토하고 주주명부에 이전 또는 질권 설정 사항을 기재한 다음 당해 주권에 대표이사가 확인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주식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는 한 주식의 이전은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Article 10 (Alteration of Entry and Registration of Pledge)

- ① A shareholder desiring an alteration of entry due to transfer of shares by assignment, sale or other similar caus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herefor to the Company, in the form prescribed by the Company, together with the share certificates involved.
- ② A shareholder desiring an alteration of entry due to causes other than a transfer of shares by assignment, sale or other similar cause, such as bequest, inheritance, merger or consolidation,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herefor to the Company, in the form prescribed by the Company, together with the share certificates involved and documents certifying the causes of acquisition.
- ③ A shareholder desiring a registration or cancellation of pledge with respect to his/her shares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herefor to the Company, in the form prescribed by the Company, together with the share certificates involved.
- ④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the Company shall examine the documents and enter a transfer or pledge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nd return to the applicant the share certificate concerned on whic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affix his seals for confirmation.
- ⑤ The transfer of a share shall not be binding upon the Company unless the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has been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제11조 (주식의 양도)

회사의 주식은 오직 주주간계약서의 해당 조문에 따라 이전되거나 양도된다.

Article 11(Transfer of Shares)

Shares in the Company shall be assigned or transferr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Shareholders Agreement.

제12조 (주권의 재발행)

- ①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주권의 손상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원하는 주주는 폐기될 주권을 회사 소정 양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손상이나 오손이 극심하여 주권의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권이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교체에 관하여는 다음 항을 적용한다.

- ② 주권의 분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발행을 원하는 주주는 분실된 주권에 대한 제권 판결의 정보이나 등본을 회사 소정 양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12 (Re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 ① A shareholder desiring reissuance of a share certificate for reason of partition or amalgamation of shares, or damage or soiling to a share certificat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herefor to the Company, in the form prescribed by the Company, together with the share certificate to be canceled. However, when the damage or soiling is so extreme that the share certificate is not legible or cannot be authenticated, it shall be regarded as lost and the following Paragraph shall apply for its replacement.
- ② A shareholder desiring the issuance of a new share certificate due to loss of his share certificate shall submit to the Company an application therefor, in the form prescribed by the Company, together with the original or the certified copy of a Judgment of Nullification with respect to the lost share certificate.

제13조 (수수료)

본 정관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명의개서 또는 주권의 재발행을 위하여, 회사는 동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이사회가 정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Article 13 (Fees)

For change of entry or reissuance of share certificate pursuant to Article 11, 12 or 13 hereof, fee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may be collected from the applicant before such procedure may be consummated.

제14조 (주소 및 인감의 보고)

- ① 주주와 그 대리인은 회사에 성명, 주소와 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나 그 대리인은, 추가로 한국 내에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주소나 대리인을 회사에 알릴 수 있다.
- ③ 주주의 대리인은 회사에 그 대리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권에 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적절한 증명서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전 각 항의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회사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Article 14 (Report of Addresses and Seals)

- ① Shareholders and their attorneys shall report to the Company their names, addresses, and seals or signatures; any change thereof shall also be reported to the Company immediately.
- ② Shareholders or their attorneys who reside in foreign countries may, in addition, inform the Company of their provisional addresses to where, or agents to whom, notices may be given in Korea.
- ③ An attorney for a shareholder shall submit to the Company a certificate establishing his power of representation. Any change therein must be reported to the Company by submission of any appropriate certificate or evidence.
- ④ The Company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attributable to failure to comply with the above reporting provisions.
- ⑤ All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Company shall bear the seal impression or signature(s) reported in Paragraph ① above.

제15조 (주주명부)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주주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Article 15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Company shall mainta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Korean law.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년도 말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말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고, 또는 특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일전 삼(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고, 회사는 특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위 제1항에 열거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간주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에 앞서 최소한 이(2)주간 전에 그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

Article 16 (Suspension of Entry of Alterations in Register of Shareholders and Record Date)

- ① In order to determine persons who are entitled to exercise voting rights, receive dividends, or exercise other rights as shareholders or pledges in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Company may suspend entry of alteration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from the day following the last day of each fiscal year up to the last day of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for such fiscal year, or the Company may deem any shareholder whose name appe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on a specified date to be the shareholder who is entitled to exercise such rights.
- ② The Company may suspend entry of alteration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3) months before the day of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the Company may deem any shareholder whose name appe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on a specified date to be the shareholder who is entitled to exercise the rights enumerated in Paragraph ① above in connection with such shares.
- ③ The Company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period and dates referred to in preceding Paragraphs ① and ② at least two weeks in advance of the commencement of the period and of the occurrence of such date.

제3장 주주총회

CHAPTER 3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제17조 (주주총회의 종류와 개최)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두 종류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삼(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Article 17 (Types and Holding of General Meeting)

- ① General Meetings of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shall be of two kinds: ordinary and extraordinary.
- ②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held within three (3)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scal year.
- ③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may be convened at any time in compliance with resolu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Korean laws.

제18조 (총회의 소집)

- ① 모든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소집 장소는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본점으로 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장소를 대한민국 내의 어디든 정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늦어도 회의 예정일 이(2)주 전에 주주와 기타 소집 통지를 받아야 할 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은 회의 전에 회사의 모든 주주의 서면동의를 얻어 단축될 수 있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Article 18 (Convening of General Meeting)

- ① The convening of all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place for convening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the head office of the Company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If the Board of Directors wishes to do so, it may convene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y place within or outside of Korea.
- ② In convening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ersonal Notice thereof shall be given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least two (2) weeks prior to the date set for such meeting to the shareholders and other persons entitled to receive notice; provided, however, that the above period may be shortened with the written consent of all shareholders of the Company received before the meeting. The notice shall state the date, time, place of the meeting and the purpose of the meeting.

제19조 (주주총회의 의장)

본 정관 제27조에 의해 선출되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 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단,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주주총회를 주재하지 못할 때는 사내이사인 부대표/수석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Article 19 (Presiding Offic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CEO of the Company el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hereof shall preside ove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ovided,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absent or fails to preside ove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Deputy CEO/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who concurrently serves as an Inside Director shall preside ove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lac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제2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다음에 열거된 각 호 사항들을 포함한 모든 주주총회의 결의는,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의 수로 한다(단,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다른 비율을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이 회의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였을 때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납입자본금 또는 수권자본금)
3. 준비금의 자본 전입
4. 회사의 합병, 해산 또는 청산
5.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6.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취득
7. 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취득 또는 처분
8. 회사의 예산 및/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9. 회사 재무제표의 승인
10. 주주들에 대한 배당지급의 금액 및 방식의 승인
11.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한도 승인
12. 기타 상법상 주주총회의 일반 결의나 특별 결의를 요하는 사항

Article 20 (Adoption of Resolutions)

All resolutions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cept as otherwise required by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erein, shall be adopted if an approval is obtained from a supermajority of shareholders, where supermajority means at least two-thirds (2/3)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f the Company having voting rights (except where the shareholders unanimously agree on a different percentag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Further, quorum for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stituted if at least two-thirds (2/3)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f the Company are present or represented in person or by proxy at such meetings.

1.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increase or decrease in capital (paid-in or authorized);
3. conversion of reserves into capital;
4. merger, dissolution, or liquidation of the Company;
5. election or removal of representative, inside, outside, non-standing directors, and statutory auditor of the Company;
6. transfer of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or acquisition of the whol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7.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the whole or material part of the Company's assets;
8. approval of the Company's budget and/or business plan;
9. approval of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10. approval of the amount and manner of dividend payments, if any, to the shareholders;
11. approval of the ceiling amount of remuneration for Insid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Non-Standing Directors and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12. any other matter which requires a resolution or a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s pursuant to the Commercial Act of Korea.

제21조 (의결권)

- ① 각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 한(1)주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 경우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각 주주총회 때마다 자신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주주는 신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주식을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할 수 있다.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그 뜻과 사유 및 신탁이나 기타 근거로 타인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적어도 삼(3)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기제하여 주주총회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21 (Voting)

- ① Each shareholder shall have one (1) vote for each share he owns.
- ② A shareholder may exercise his vote by proxy. In such case, the proxy holder must file with the Company a document evidencing his/her authority at each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t which he/she acts as proxy.
- ③ A shareholder of the Company may vote its shares separately rather than as a block, but only in case such shareholder holds shares belonging to others in trust or on some other basis. Any shareholder who wishes to split his/her votes shall give at least three (3)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Company of such intention, the reason therefor, and the number of shares it holds for others in trust or on another basis.
- ④ A shareholder may exercise his/her vote through official signed document without attending a meeting in person. In such case, the Company shall send the shareholder a notice of convening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cluding documents and references which are required for the shareholders to exercise his/her voting right. Additionally, the shareholder should submit its official

voting at least one day before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제22조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주주총회는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연기 또는 휴회 기간이 십사(14)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본 정관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Article 22 (Postponement or Adjournment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 resolution for postponement or adjournment may be adop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such case, Article 18, Paragraph ② shall not apply; provided, however, that such postponement or adjournment does not exceed fourteen (14) days.

제23조 (주주총회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진행 경과의 내용과 그 결과는 한글과 영문으로 의사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의사록은 주주총회의 의장과 출석한 이사들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국문본과 영문본 의사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 ② 총회 후 삼십(30)일 이내에 의사록 사본을 주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Article 23 (Minutes of General Meeting)

- ① The substance of the proceedings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results thereof shall be recorded in the minutes in both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 which shall bear the names and seals or signatures of the presiding officer and of the directors present at the meeting, if any, and shall be preserved in the Company's head office and branches. The English version of all minutes shall gover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ies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versions.
- ② Copies of minutes shall be sent to shareholders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meeting.

제4장 이사 및 집행간부

CHAPTER 4 DIRECTORS AND EXECUTIVE OFFICERS

제24조 (이사의 수)

- ①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각 주주의 지분관계를 참조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의 수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rticle 24 (Number of Directors)

- ① The Company shall have three (3) up to seven (7) directors, which may be changed by the Shareholders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y reference to the capital ownership of each shareholder of the Company.
- ②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shall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s.

제25조 (선임과 해임)

- ①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본 정관 제24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사내이사인 부대표/수석부사장은 본 정관 제24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결원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충원될 수 있다.
- ②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해임되는 것으로 본다

Article 25 (Election and Removal)

- ① The Representative director, CEO and Outside Directors shall be recommended by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and elec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hereof and the Deputy CEO/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who concurrently serves as an Inside Director, shall be elec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hereof and vacancies may be filled by any Ordinary or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② Any director may be removed from office by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 The office of a director or statutory auditor shall be deemed to be automatically vacated without the need of approval by the shareholders if such director is no longer qualified to serve such office as required by applicable Korean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d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제26조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이(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료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Article 26 (Term of Office)

- ① The term of office of the directors shall serve for up to two (2) years and may be reappointed for consecutive term; provided, however, that the terms of office shall be extended until the close of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vened with respect to the last fiscal year of such term of office only if the termination date is between the end of the fiscal year and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② The terms of office of a director elected to fill a vacancy is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office of his/her predecessor.

제27조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

- ① 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고 본 정관 제25조에 따라 선출된 사장이 대표이사가 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그 직무와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지시와 방침 및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회사 경영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마케팅총괄부사장(CMO/Executive Vice President), 선임운용부문장(Senior CIO)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집행 간부로 선임된다.
- ⑤ 사내이사인 부대표/수석부사장(Deputy CEO/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마케팅총괄부사장(CMO/Executive Vice President), 선임운용부문장(Senior CIO), 경영관리부문장 (COO) 은 주주간계약서의 해당 조항에 따라 임명된다.

Article 27 (Representative Directors, Executive and Other Officers)

- ① The Company shall have Representativ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ct of Korea and the Chief Executive Officer el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25 of this Articles shall serve as Representative Director.
- ②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represent the Company and manage all affairs of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and policie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for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the Shareholders Agreement.
- ③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regularly submit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its approval, reports as to the conduct of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④ Chief Marketing Officer (CMO)/Executive Vice President and Senior Chief Investment Officer (Senior CIO) shall be appointed as executive officers of the Company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⑤ Deputy CEO/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who concurrently serves as an Inside Director, Chief Marketing Officer (CMO)/Executive Vice President, Senior Chief Investment Officer (Senior CIO), and Chief Operating Officer (COO)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hareholders Agreement.

제28조 (감사위원회)

- ① 회사는 관련 법규에 의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2/3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 받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⑥ 감사위원회의 감사 내용과 그 결과는 국문과 영문으로 감사록에 기록하고 그 감사를 지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Article 28 (Audit Committee)

- ① The Company shall establish the Audit Committee as the committee under the authority of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s
- ② The Audit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three (3) or more directors with at least 2/3 should be outside directors.
- ③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by an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two-thirds (2/3)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entitled to vote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ursuant to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nd the Commercial Act.
- ④ The audit committee shall appoint the chairman of the audit committee by the approval of the audit committee itself.
- ⑤ The audit committee shall examine the accounts and business of the Company.
- ⑥ The substance of the insp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e results thereof shall be recorded in the minutes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which shall bear the name and seal or signature of the members of audit committee who have instructed such inspection.

제29조 (보수)

- ① 회사는 자산운용사의 동종 또는 유사업계 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기타 임원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경우 보수한도)를 결정한다. (2025.07.02 개정)

② 삭제 (2025.07.02 개정)

③ 이사 및 기타임원의 퇴직금 지급 등의 세부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025.07.02 개정)

Article 29 (Compensation)

① The Company shall determine the amount (ceiling amounts in case of the Inside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 of salaries, bonuses, and other benefits of the Insid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Non-executive Directors, and Other executive officers by the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in consideration of the market practice of the same or similar businesses. (2025.07.02. Amended)

② Deleted(2025.07.02. Amended)\

③ The details regarding the remuneration, severance pay etc. of the directors and other executives shall be governed by the Regulations on Executive Remuneration resolv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2025.07.02. Amended)

제5장 이 사 회

CHAPTER 5 BOARD OF DIRECTORS

제30조 (이사회 의 성격)

① 이사회는 회사의 이사들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본 정관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할 권한을 갖는다.

Article 30 (Nat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①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shall constitute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②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have the power and authority to make all decisions regarding the Company's management other than those subject to approval by the shareholders as provided under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applicable Korean laws.

제31조 (회의 의 소집)

① 회사는 매 분기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장,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일시는 회의를 소집하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정한다. (2024.10.31 개정)

- ② 이사회는 소집 장소는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본점으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일 예정일 칠(7)일 전에 각 이사에겐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위 통지에는 회의에서 심의될 안건과 사안을 상세하게 명기한다. 단, 회의 전에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관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진행될 수 있다. 동 수단에 의한 참석자들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Article 31 (Calling of Meetings)

- ④ The Company shall hold ordinary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quarterly or at such fixed intervals as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cide, and extraordinary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y other director, or upon the demand of a Committee within the Board. The date and time for convening an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by the director calling the meeting. (2024.10.31 Amended)
- ⑤ The place for convening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the head office of the Company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⑥ Notice of the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given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y personal notice to each director via mail or electronic methods etc. at least seven (7) days prior to the date set for any such meeting, which notice shall specify in detail the agenda and issues to be discussed thereat; provided, however, that the above period may be shortened or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bove may be omitted with the consent of all directors before any such meeting.
- ⑦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applicable laws,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any means of communication by which participants may transmit and receive sounds simultaneously during the meeting. Participants by these means shall be deemed to be present in person at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제32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④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Article 32 (Presiding Officer)

- ①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elected among Outside Directors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hairperson shall preside over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nd make efforts to invigorate the Board of Directors.
- ②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bove, the Board of Directors may elect a person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as Chairperson and in such a case,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disclose the reasons thereof and elect a person who represents Outside Direc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nior Outside Director”).
- ③ The Senior Outside Director shall conduct duties describ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1. Convening and presiding over the meetings of the Board of Outside Directors which consists of all Outside Directors
 - 2. Offering support to make sure that Outside Directors receive data and information from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and the Company to conduct their duties
 - 3. Other businesses necessary to enhanc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Outside Directors
- ④ The Chairperson shall serve for a term of one (1) year.
- ⑤ In case of absence or incapacity of the Chairperson of Boards of Directors, Directors, in the order determined by Board of Directors, shall step in as acting Chairperson.

제33조 (이사회 의 권한 및 결의방법) (2024.10.31 개정)

- ①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주주간계약서에 열거된 전략적 주제에 관해서는 재직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이사회가 성립한다.
- ② 법률이나 본 정관에 의거하여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사회 운영규정」 또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이사회의 심의·결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이사회 의 모든 조치와 결의(제3항 각 호의 조치와 결의사항은 제외한다)는 총 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 (2024.10.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전략적 주제에 관한 이사회는 모든 조치와 결의는 총이사 2/3 이상의 찬성 투표를 요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회사 예산 및 사업계획,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기타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납입자본금 또는 수권자본금)
5.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 승인
6. 배당 지급의 금액 및 방식의 승인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주주간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외 대표이사에 대한 추가적인 회사 업무 위임
9. 회사 임원 또는 직원에 관한 중요한 결정(즉, 채용, 교육, 보수, 상여금, 징계)
10. 회사의 합병, 해산 또는 청산
11.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취득
12. 회사의 경영방침 및/또는 중요한 규정의 제정/변경
13. 회사 중요한 자산의 취득, 양도 또는 처분
14.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전략 또는 운영의 변경
15. 회사의 중요한 투자실행 또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자금대차 또는 지급보증 또는 수령 포함)
16. 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소송의 개시
17. 자회사, 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의 설치. 본 호와 관련하여 회사의 주주인 Amundi Asset Management 는 회사의 해외 자산에 관한 투자서비스 또는 상품을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제외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해 종합적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18. 기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19.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역할 결정
20. 주주간계약에 따라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회계법인의 선임 또는 해임
21.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1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24.10.31 개정)

- 2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3.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24. 상법상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의 유용 승인
- ④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 어느 이사도 회사의 어느 주주의 피지명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의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⑤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2024.10.31 개정)

Article 33 (Authority and Resolution Methods of the Board of Directors) (2024.10.31 Amended)

- ①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the directors in office shall be necessary to constitute a quorum of any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provided, however, that, with respect to the Strategic Topics specified in the Shareholders Agreement, the attendance of no less than two-thirds of all the directors in office shall be necessary to constitute a quorum of board meetings therefor.
- ②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law or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all actions and resolu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those specified as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in the 「Regul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 of NH-Amundi Asset Management」 or 「Internal Regulation on Corporate Governance」 (excluding the actions and resolutions listed in paragraph 3 below), shall be adopt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board. (2024.10.31 Amended)
- ③ All actions and resolutions by the Board of Directors at the board meeting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actions (collectively “Strategic Topics”) shall require the affirmative vote of no less than two thirds (2/3) of the total members of the board.
1. Convening a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2. Approval of the Company’s budget and business plan, business report, balance sheet, and other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3.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4. An increase or decrease in capital (paid-in or authorized);
 5. Approval of any transaction between the Company and any director;
 6. Approval of the amount and manner of the dividends payment;
 7. Conversion of reserves into capital;
 8. Delegation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further responsibilities over the affairs of the Company, in addition to those already granted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pursuant to the Shareholders Agreement;
 9. Any important decision regarding the Company’s officers and employees (i.e., recruitment,

- training, compensation, bonuses, discipline);
10. A merger, dissolution, or liquidation of the Company;
 11. The transfer of the whole or substantial part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or acquisition of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12. Establishing/altering the management principles and/or important regulations of the Company;
 13. The acquisition, transfer or disposal of important material assets of the Company;
 14. A change in the fundamental business strategy or operations of the Company;
 15. Making any substantial investment or entering into any important contract by the Company, including making or receiving any loans or guarantees;
 16. Entering into any litigation that may result in the loss of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Company's assets;
 17.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branch offices or any other business offices. Provided that, for the purpose of this item 15, Amundi Asset Management, the shareholder of the Company, shall provide full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company's overseas businesses, except for the company's sale of investment services or products for non-Korean assets to non-Korean customers;
 18. Any other matters which require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9. Determining the creation, membership and the roles of the Committees;
 20. The removal or appointment of a reputable international accounting firm properly licensed in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Shareholders Agreement as the Company's external auditor;
 21. Establishment, amendment, or closing of Internal Control Standard and Regulation of Risk Management which is related to laws;
 - 21-2.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of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policies; (2024.10.31 Amended)
 22. Establishment of relating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Chief Executive Officer's succession process;
 23. Supervisory on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major shareholder, officer, and company, and;
 24. Approval of director's use of company business opportunity as permitted by the Commercial Act of Korea.
- ④ No director who has an interest in a matter for resolution can exercise his/her vote upon such matter; provided, however, that no director shall be deemed to have an interest in a matter and be disqualified to vote on such a matter on the ground that such director is a nominee of any shareholder of the Company.
- ⑤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supervise the fulfillment of the overall management responsibilities of internal controls by the CEO and other executives, as stipulated in Article 30-4 of the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2024.10.31 Amended)

제34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며 상대어로 통역한다. 이사회 의안 및 경과요령과 그 결과(당해 결의에 반대한 이사의 성명과 반대 사실을 포함하여)는 국문과 영문으로 의사록에 기록하고 그 회의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본점에 이를 비치한다. 국문본 의사록과 영문본 의사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이사회 정보제공, 조치 또는 결의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되는 의안이나 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한다.
- ② 회의 후 삼십(30)일 이내에 의사록 사본을 모든 이사와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Article 34(Minutes of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 ① The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conducted in Korean or English with translation in the other language. The agenda and the substance of the course of the proceedings of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results thereof (including the identity and opposition by that director to a resolution) shall be recorded in minutes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 which shall bear the names and seals or signatures of the directors and statutory auditors in attendance at the meeting and shall be preserved in the Company's head office. The English version of the minutes shall gover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ies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versions. Proposals or reports brought before any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information, actions or resolutions shall be prepar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 ② Copies of the minutes shall be sent to each director and statutory auditor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meetings.

제34조의2 (위원회)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내부통제위원회를 둔다. (2024.10.31 개정)

Article 34-2 (Committees)

The Board shall establish the Officer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the Audit Committee,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the Remuneration Committee and the Internal Control Committee. (2024.10.31 Amended)

제6장 회 계

CHAPTER 6 ACCOUNTING

제35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Article 35 (Fiscal Year)

The fiscal year of the Company shall be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of each year.

제36조 (회계장부와 기록)

- ① 회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대한민국 및 국제적인 회계원칙을 준수하여 회사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회계장부와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요 회계장부와 기록은 국문본으로 보관한다. 다만, 의사록과 재무제표는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보관한다.
- ② 대표이사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일 육(6)주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위 1호 내지 3호의 부속명세서
 5. 영업보고서
- ③ 감사위원회는 위 제 2 항의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사(4)주 내에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 일(1)주일 전부터 감사보고서와 위 제 2 항에 기재된 서류들을 회사의 본점에 오(5)년간, 위 서류들의 등본을 회사의 지점에 삼(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위 제 2 항 1 호 내지 3 호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제 2 항 5 호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 5 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Article 36 (Books of Account and Records)

- ① The books of account and records shall be prepar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Korean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principles and shall accurately reflect the Company's financial position. The principle books and records of the Company shall be kept in Korean. However, the minute books and financial statements shall be kept in Korean and English.

- ②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prepare the following documents which shall have been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submit them to the audit committee six (6) weeks before the day set for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 a balance sheet;
 2. a profit and loss statement;
 3. a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or 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4. supplementary schedules for Items 1. Through 3. above; and
 5. a business report.
- ③ The audit committee shall submit its audit report thereof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in four (4) weeks of receipt of the documents described in Paragraph ② above.
- ④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keep on file a copy of the auditor's report and the documents described in Paragraph ② above at the head office of the Company for five (5) years and certified copies of all of such documents at the branches of the Company for three (3) years beginning from one (1) week before the day set for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⑤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submit the documents described in 1 through 3 of Paragraph ② above to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for their approval and shall submit the document described in 5 of Paragraph ② above to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shall make a report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thereof.
- ⑥ If the approval set forth in Paragraph ⑤ above is obtaine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without delay, give public notice of the balance sheet to the extent required by law.

제37조 (배당금 및 특별배당금의 지급)

-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매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회사가 달리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등재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된다.
- ② 배당금은 “특별배당금” 과 “일반배당금” 의 두 종류로 나누어 지급한다. 일반배당금과 특별배당금 산정방식은 주주간계약서 또는 총 주주의 동의로 정하고 나누어진다.
- ③ 배당금은 배당금 지급의 결의를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일로부터 일(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 발행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는 동 이익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오(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Article 37 (Payment of Dividends and Special Dividends)

- ① Dividends shall be declared by a resolution of an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paid to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who have been duly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s of the end of each fiscal year or any other record date for such distribution of dividends as specified by the Company.
- ② Dividends shall be split and paid in two parts: “Special Dividend” and the “Normal Dividend”. The calculation method of special and normal dividends shall be determined and split as specified by the Shareholders Agreement or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entire shareholders.
- ③ Dividends shall be paid within one (1) month after the declaration of dividends at an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eclaring such dividends and, subject to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at such meeting, may be paid in the form of new shares to be issued.
- ④ Any claim to dividends expires unless it is exercised within five (5) years from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eclaring such dividends.

제7장 보 칙

CHAPTER 7 SUPPLEMENTARY PROVISIONS

제38조 (규정)

회사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Article 38 (Regulations)

The Company may adopt, with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uch regulations as may be required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affairs of the Company.

제39조 (상법의 적용)

본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각 경우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또는 대한민국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Article 39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Act)

Matters not specifically provided for herein shall be determined in conformity with resolutions adopted at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is Company, or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f Korea, as the case may be.

제40조 (비밀 보장)

회사의 모든 이사, 기타 임원 및 직원은 회사의 모든 매매와 거래, 고객과 기타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각자의 임직원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에 관하여 그 비밀을 엄격히 준수하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로 회사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서약서에 서명한다.

Article 40 (Secrecy)

Every director, other officer or employee of the Company shall be bound to observe strict secrecy with regard to all dealings and transactions of the Company and the affairs of its clients and of persons dealing with the Company and any other matters which come to their knowledge by virtue of their respective offices or employments, and shall, if and when required by the Company, sign a declaration to the above effect in such form as the Company may prescribe.

제41조 (언어)

본 정관의 국문본과 영문본은 모두 정본으로 한다. 단, 상충되거나 의미가 불확실한 경우 영문본 정관이 우선한다.

Article 41(Language)

The Korean and English versions of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qually authentic, but in the event of a conflict or uncertainty of meaning,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제42조 (창업비)

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경비는 회사의 창업비로 계상한다.

Article 42 (Incorporation Expenses)

The expenses for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shall be settled as incorporation expenses of the Company.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03년 1 월 27 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Jan.27, 2003.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05년 6 월 23 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June.23, 2005.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05년 10 월 11 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Oct.11, 2005.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06년 6 월 23 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June 23, 2006.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07년 8 월 4 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August 4, 2007.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09년 3 월 30 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Mar 30, 2009.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12년 12 월 13 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사업년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Dec 13, 2012. But Article 35(Fiscal Year) shall be effective on April 1, 2013.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13년 9 월 12 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Sep. 12, 2013.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15년 8 월 1 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Aug. 1, 2015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15년 9 월 21 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Sep. 21, 2015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16년 5 월 1 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May. 1, 2016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16년 10 월 28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Oct. 28, 2016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18년 6 월 19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Jun. 19, 2018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18년 12 월 6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Dec. 6 , 2018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19년 9 월 26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Sep. 26 , 2019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22년 3 월 31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March. 31 , 2022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22년 5 월 24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May. 24 , 2022

부 칙(Addendum)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0월 31일자로 시행한다.

Article 1 (Effective Date) This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Oct. 31, 2024

제2조(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적용시기)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회사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때부터 적용한다.

Article 2 (Effective Date of the Obligation to Manage Internal Controls,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3, Paragraph 5 shall apply from the time the company first prepares and submits
the Responsibilities Map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부 칙(Addendum)

이 정관은 2025년 7 월 2일자로 시행한다.

Thes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effective on July. 2, 2025

(첨부 2)

이사회 운영규정

Regul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 of NH-Amundi Asset Management

2003. 2. 5 제정 Established on Feb 5, 03

2003. 2. 14 개정 Amended on Feb 14, 03

2009. 3. 30 개정 Amended on Mar 30, 09

2012. 12. 11 개정 Amended on Dec 11, 12

2013. 9. 4 개정 Amended on Sep 4, 13

2015. 8. 28 개정(Amended) 경영지원본부 채무회계팀(Tel 3753)

2016. 10. 26 개정(Amended) 경영지원본부 채무회계팀(Tel 3754)

2017. 1. 23 개정(Amended) 경영지원본부 채무회계팀(Tel 3754)

2018. 2. 12 개정(Amended) 경영지원본부 채무회계팀(Tel 3754)

2018. 12. 06 개정(Amended)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Tel 3756)

2022. 5. 24 개정(Amended) 경영관리부문 경영기획팀(Tel 3755)

2024. 1. 22 개정(Amended) 경영관리부문 경영기획팀(Tel 3755)

2024. 10. 31 개정(Amended) 경영관리부문 경영지원팀(Tel 526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set out the operational rul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s of the Company.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간 계약서, 정관 및 이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 (Applicable Scope)

Matters in relation to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comply with the Shareholders Agreement,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the "AOI") and this regulation except otherwise as stipulated by the applicable Korean Laws.

제 3 조 (선임, 임기, 이사의 수)

- ①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사내이사인 부대표/수석부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이(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이사의 수는 회사의 지분을 반영하여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

Article 3 (Appointment, Term, and Number of Directors)

- ① The Representative Director, CEO and Outside Directors shall be recommended by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and elec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Deputy CEO/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who concurrently serves as an Inside Director, and non-standing director shall be elec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directors shall serve for up to two (2) years and may be reappointed for consecutive term. The Board shall consist of within seven (7) directors.
- ② The number of Directors can be changed by the Shareholders by reflecting the capital ownership of the Company (the “AMC”).

제 4 조 (개최시기, 소집절차 및 장소)

- ① 회사는 매 분기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장,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2024.10.31 개정)
-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일 예정일 칠(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위 통지에는 회의에서 심의될 안건과 사안을 상세하게 명기한다. 단, 회의 전에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관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진행될 수 있다. 동 수단에 의한 참석자들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④ 이사회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며 상대어로 통역된다. 이사회는 의사록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회의 후 이사와 감사에게 배포한다.
- ⑤ 이사회의 소집장소는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본점으로 한다.

Article 4 (Convening time, process and place)

- ① The Company shall hold ordinary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quarterly or at such fixed intervals as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cide, and extraordinary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calle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y other director, or upon the demand of a Committee within the Board. (2024.10.31 Amended)

- ② Notice of the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given to each director via mail or electronic methods etc. at least seven (7) days prior to the date set for any such meeting, which notice shall specify in detail the agenda and issues to be discussed thereat; provided, however, that the above period may be shortened or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bove may be omitted with the consent of all directors before any such meeting.
- ③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applicable laws,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any means of communication by which participants may transmit and receive sounds simultaneously during the meeting. Participants by these means shall be deemed to be present in person at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 ④ The Board Meetings shall be conducted in Korean or English with translation in the other language. Minutes of the meetings of the Board shall be prepar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and distributed to Directors and Statutory Auditors after such meetings.
- ⑤ The place for convening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the Head Office of the Company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제 5 조 (감사의 이사회 참석 및 진술 권한)

-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안건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Article 5 (Auditor's Power to Attend Board Meeting and State Opinions)

- ① The Statutory Auditor may be present at, and give his or her opinions to, any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When the Auditor deems that a Director acts or is likely to act in contravention of the applicable laws or the AOI, he or she shall report such act to the Board of Directors.
- ② The statutory Auditor may demand that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e convened, by filing with the Board of Directors a written statement of the proposed agenda of, and the reason for convening, the meeting.

제 6 조 (의장)

- ⑥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⑧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4.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 5.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6.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⑨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⑩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Article 6 (Presiding Officers)

- ⑥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elected among Outside Directors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hairperson shall preside over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nd make efforts to invigorate the Board of Directors.
- ⑦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bove, the Board of Directors may elect a person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as Chairperson and in such a case,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disclose the reasons thereof and elect a person who represents Outside Direc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nior Outside Director”).
- ⑧ The Representative Outside Director shall conduct duties describ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4. Convening and presiding over the meetings of the Board of Outside Directors which consists of all Outside Directors
 - 5. Offering support to make sure that Outside Directors receive data and information from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and the Company to conduct their duties
 - 6. Other businesses necessary to enhanc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Outside Directors
- ⑨ The Chairperson shall serve for a term of one (1) year.
- ⑩ In case of absence or incapacity of the Chairperson of Boards of Directors, Directors, in the order determined by Board of Directors, shall step in as acting Chairperson.

제 7 조 (이사회 의 권한 및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한다.(2024.10.31 개정)

- ② 관련법령이나 정관에 의거하여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정관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총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이사회의 모든 조치와 결의는 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 표결을 요한다. (2024.10.31 개정)
 - 1.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 기타 법령 등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33조 제3항에 열거된 전략적 주제의 결의는 총 이사의 2/3 이상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총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 표결을 요한다. (2024.10.31 개정)
- ④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 어느 이사도 회사의 어느 주주의 피지명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의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Article 7 (Authority and Resolution Methods of the Board of Directors)

- ① The Board of Directors resolves matters prescribed by relevant law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atters delegat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key policies on management, and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business. The Board also oversees the fulfillment of the CEO's overall management responsibilities regarding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2024.10.31 Amended)
- ② Unless regulated differently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presence of a majority of the total Board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meetings of the Board to deliberate on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 below, and all actions and resolutions of the Board require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total Board members. (2024.10.31 Amended)
 - 1. Matters related to the payment of donations that exceed one hundred million (100,000,000) Korean Won per case
 - 2. Other matters that require a Board resolution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 ③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aragraph, the strategic topics listed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icle 33.3 require a resolution passed at a meeting of the Board attended by no less than two thirds of the total Board members, by an affirmative vote of no less than two thirds of the total Board members (2024.10.31 Amended)
- ④ No Director who has an interest in a matter for resolution can exercise his/her vote upon such matter; provided, however, that no Director shall be deemed to have an interest in a matter and be disqualified to vote on such a matter on the ground that such Director is a nominee of any

shareholder of the Company.

제 8 조 (이사의 해임)

- ① 이사는 대한민국의 관련법률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될 수 있다.
- ② 이사나 어떠한 사유로 결원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러한 결원이 발생한 이후 30일 이내에 결원된 이사를 지명했던 당사자가 지명한 자를 이사로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Article 8 (Removal of Directors)

- ① The Directors may be removed with caus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of Korea, or with or without cause by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unless otherwise prohibited by applicable laws.
- ② If the position of a Director becomes vacant for any reason, the Parties agree to cause their shares to be voted to elect as Director a person nominated by the Party who had nominated the Director whose office is vacant, within thirty (30) days of such office becoming vacant.

제 9 조(위원회 설치)

- 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일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집행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아래에 열거된 각 호의 위원회들(이에 한정되지 않음) (집합적으로 “위원회”)을 설치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2024.10.31 신설)
- ②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위원의 선임, 위원회에 대한 이사회 권한의 위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은 이사회에서 총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각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자산운용사의 직원 및 당사자가 초청하는 기타 외부 인사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초청된 외부인사는 의결권 없이 자문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 ④ 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 동 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에 대한 이사회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위원들의 임무를 명시해야 한다.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허용되는 경우 동 위원회는 이사회에 자문을 하거나 또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다.

Article 9 (Committees)

- ① To the extent specified by the Commercial Act of Korea, the FISC,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nd in the AOI, the Board may create the following functional committees, which list is not limited (collectively, the "Committees") under its authority so as to execute and manage the daily affairs of the AMC with mor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 1.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 2. Audit Committee
 - 3. Risk Management Committee
 - 4. Remuneration Committee
 - 5. Internal Control Committee (2024.10.31 Newly Established)
- ② The creation of the Committees, appointment of members thereto, delegation of the Board authority to the Committee, and the creation of the operation manuals of the Committees shall require a resolution pass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no less than two thirds of the total Board members.
- ③ Each Committee established shall be composed of two (2) or more Directors among whom shall be included, and may include employees of the AMC and any outside person members invited by any of the Parties; *provided*, that such outside person members will only have a consulting role, with no voting powers.
- ④ The Board shall approve operation manuals for each committee. Such operation manuals must specify the power and authority delegated to the Committee by the Board and the duties of such Committee members. Where permitted under such operation manuals, such Committee may advise the Board or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 Board.

제 10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안 및 경과요령과 그 결과(당해 결의에 반대한 이사의 성명과 반대 사실을 포함하여)는 국문과 영문으로 의사록에 기록하고 그 회의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본점에 이를 비치한다.
- ② 이사회는 회의개최 후 삼십(30)일 이내에 의사록 사본을 모든 이사와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Article 10 (Minutes of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 ① The agenda and the substance of the course of the proceedings of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results thereof (including the identity and opposition by that Director to a

resolution) shall be recorded in the minutes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 which shall bear the names and seals or signatures of the Directors and the Statutory Auditor in attendance at the meeting and shall be preserved in the Company's head office.

- ② Copies of the minutes shall be sent to each Director and Statutory Auditor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meeting.

제 11 조 (이사회 서기)

이사회 의장은 회사 경영관리부문장(COO)을 이사회 서기로 지명한다.

Article 11 (Secretary to the Board Meetings)

The Chairman of the Board shall nominate the Chief Operating Officer (COO) of the Company as the Secretary to the Board meetings.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0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the 5th February 2003.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0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February 14, 2003.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0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March 30, 2009.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December 11, 2012.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September 4, 2013.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1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August 28, 2015.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October 26, 2016.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January 23, 2017.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February 12, 2018.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December 6, 2018.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May 24, 2022.

부 칙 (Addendum)

이 규정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on Jan 22, 2024.

부 칙 (Addendum)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10. 31.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승인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Article 1 (Effective Date) This regulation shall come into effect from the time the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approved at the company's shareholders' meeting to be held on October 31, 2024.

제2조(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적용시기)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사회의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 감독' 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때부터 적용한다.

Article 2 (Effective Date of the Obligation to Manage Internal Controls,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1) regarding the Board of Directors' "oversight of the CEO's fulfillment of overall management responsibilities for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shall apply from the time the company first prepares and submits the Responsibilities Map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첨부 3)

지배구조 내부규범

Internal Regulation on Corporate Governance

2016.10.28 제정(Established) 경영지원부문 재무회계팀 (Tel 3754)

2017.1.23 개정(Amended) 경영지원부문 재무회계팀 (Tel 3754)

2017.2.13 개정(Amended) 경영지원부문 재무회계팀 (Tel 3754)

2017.10.23 개정(Amended) 경영지원부문 재무회계팀 (Tel 3754)

2018.6.14 개정(Amended) 경영지원부문 재무회계팀 (Tel 3754)

2018.11.26 개정(Amended) 경영지원부문 경영기획팀 (Tel 3756)

2021.12.29 개정(Amended) 경영관리부문 경영기획팀 (Tel 3759)

2022.5.24 개정(Amended) 경영관리부문 경영기획팀 (Tel 3755)

2024.10.31 개정(Amended) 경영관리부문 경영지원팀 (Tel 5265)

제 1 장 총 칙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Article 1 (Purpose)

This Regulation is to prescribe detailed principles and procedures that NH-Amundi Asset Management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shall follow with respect to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stablishment of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Officers, performance evaluation of Officers and management succession

includ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etc.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and financial consumers pursuant to the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rporate Governance Act”).

제2조 (적용범위)

이 규범은 회사에 적용된다.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the Company.

제3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최고경영자”란 회사의 대표이사를 말한다.
- ② “이사회등”이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 ③ “임원”이란 이사와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단,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24.10.31 개정)
- ④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⑤ “업무집행책임자”란 집행간부, 경영관리부문장(COO), 준법감시인(CCO), 위험관리책임자(CRO) 및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말한다.
- ⑥ “집행간부”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마케팅총괄부사장(CMO/Executive Vice President) 과 선임운용부문장(Senior CIO)를 말한다.
- ⑦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란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및 주요특성, 임직원의 보수액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Article 3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Regulation shall have the following definitions.

- ① “Chief Executive Officer” shall refer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 ② “Board of Directors, etc.” shall refer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 ③ “Officer” shall refer to Directors and Other Officers. However, if individual provisions specify otherwise, those provisions shall apply. (2024.10.31 Amended)
- ④ “Director” shall refer to Inside, Outside, and Non-standing director.
- ⑤ “Other Officers” shall refer to the Executive Officers, Chief Operating Officer (COO), Chief

Compliance Officer (CCO),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CRO) and Chief Consumer Officer (CCO).

- ⑥ “Executive Officers” shall refer to the Chief Marketing Officer (CMO)/Executive Vice President and the Senior Chief Investment Officer (Senior CIO) who are elected at the Company’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⑦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and Remuneration System” shall refer to an annually prepared and disclosed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policies and procedures, decision making procedures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remuneration system and the amount of remuneration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Company.

제3조의2 (제정 및 변경)

이 규범은 내부통제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로 제정·변경한다. (2024.10.31 신설)

Article 3-2 (Establishment and amendment)

This regula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amended by resolution of the Internal Control Committee and the Board of Directors. (2024.10.31 Newly Established)

제 2 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Chapter 2 Board of Directors and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제 1 절 이사회

Section 1 Board of Directors

제4조 (이사회 구성)

- ①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 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전체이사 수의 과반수로 한다.

Article 4 (Composition of Board of Directors)

- ① The Company shall compose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ose who have appropriate experiences and knowledge in various areas to conduct the duties as Directors and the members of the Board shall not be biased toward a particular expertise with common backgrounds or be in favor of a certain occupation or interest group.
- ②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comprised of all Directors and the majority shall be comprised of Outside Directors.

제5조 (이사회 의장)

- ⑪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 라 한다)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⑬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7.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 8.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9.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⑭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⑮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Article 5 (Chairperson of Board of Directors)

- ⑪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elected among Outside Directors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hairperson shall preside over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nd make efforts to invigorate the Board of Directors.
- ⑫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bove, the Board of Directors may elect a person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as Chairperson and in such a case,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disclose the reasons thereof and elect a person who represents Outside Direc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nior Outside Director”).
- ⑬ The Senior Outside Director shall conduct duties describ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7. Convening and presiding over the meetings of the Board of Outside Directors which consists of all Outside Directors

- 8. Offering support to make sure that Outside Directors receive data and information from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and the Company to conduct their duties
- 9. Other businesses necessary to enhanc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Outside Directors
- ⑭ The Chairperson shall serve for a term of one (1) year.
- ⑮ In case of absence or incapacity of the Chairperson of Boards of Directors, Directors, in the order determined by Board of Directors, shall step in as acting Chairperson.

제6조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이사의 직무집행, 대표이사등의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2024.10.31 개정)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24.10.31 신설)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 기타 관련 법령 및 이사회운영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 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금융회사의 장기적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Article 6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Board of Directors, etc.)

- ①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es the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company's operations, the execution of duties by directors, and the fulfillment of the overall management responsibilities of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by the CEO and other executives. (2024.10.31 Amended)
- ②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deliberate and resolve on the matters describ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items.
 - 1.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of management objectives and strategies
 - 2.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Budget and settlement
4. Material changes in the organization such as dissolution, transfer of business, merger, etc.
5. Establishment, amendment and abolition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risk management standards prescribed by applicable laws

5-2.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of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policies (2024.10.31 Newly Established)

6. Establishment of corporate governance policies such as management succession of the CEO
 7. Supervision of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major shareholders/officers and the Company
 8. Other matters as prescribed by relevant laws and the Regul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 ③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make effort for the fair interest of shareholders and financial consumers and long-term development of financial companies.

제7조 (소집절차)

- ① 회사는 매 분기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장,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2024.10.31 개정)
- ② 이사회 소집 장소는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본점으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일 예정일 칠(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위 통지에는 회의에서 심의될 안건과 사안을 상세하게 명기한다. 단, 회의 전에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Article 7 (Convening of Board Meeting)

- ① The Company shall hold ordinary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quarterly or at such fixed intervals as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cide, and extraordinary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y other director, or upon the demand of a Committee within the Board. (2024.10.31 Amended)
- ② The venue for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the Head Office of the Company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③ In cases where a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is convened, a written notice shall be given to each Director via mail or electronic means, etc. at least seven (7) days prior to the date set for any such meeting and such a notice shall specify in detail the agendas and issues to be discussed thereat; Provided, however, that the above period may be shortened or the procedures set forth

above may be skipped with the consent of all Directors before any such meeting.

제8조 (결의방법)

- ① 관련 법령,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의사정족수는 총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이사회 모든 조치와 결의는 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 표결을 요한다.(2024.10.31 개정)
- ② 관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진행될 수 있다. 동 수단에 의한 참석자들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Article 8 (Resolution)

- ①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pplicable laws, Article 33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Article 7 of the Regul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the presence of a majority of all Directors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a meeting of the Board, and all actions and resolutions of the Board shall require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all Directors. (2024.10.31 Amended)
- ②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applicable laws,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any means of communication by which participants may transmit and receive sound simultaneously during the meeting. Participants by these means shall be deemed to be present in person at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 ③ A Director who has a special interest in a matter for resolution may be present at, and give his or her opinions to, any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such a Director shall not exercise his or her vote upon such a matter. In such cases, the number of votes that cannot be exercised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number of votes held by Directors present.

제9조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

- ① 회사는 이사회 역할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이사회 평가지표는 이사회 역할 및 구성,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Article 9 (Evaluation on Operation of Board of Directors)

- ① The Company shall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at least once a year to improve the role of the Board and operate the Board efficiently.
- ② The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ensure objective evaluation of the role, composition, independency and appropriateness of operation, etc. and, if necessary, external evaluation agencies may be used for objective evaluation.

제 2 절 이사회 내 위원회

Section 2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제10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를 두어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리스크관리위원회
 - 4. 보수위원회
 - 5. 내부통제위원회
- ②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결의 할 수 없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권한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위원회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Article 10 (Formation of Committees within Board of Directors)

- ①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establish the following committees within the Board for its efficient operation and the majority of such committees shall be comprised of Outside Directors and, if necessary, the Board may create an additional committee and delegate its authorities to such a committee.
 - 1.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 2. Audit Committee
 - 3. Risk Management Committee
 - 4. Remuneration Committee
 - 5. Internal Control Committee

- ② The Board of Directors may resolve on the agenda which has already been resolved by any of the Committees mentioned above except for the Audit Committee.
- ③ Detailed matters for each Committee such as the appointment and authority of chairperson shall be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each committee.

제11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후보자를 심사·선정하여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 1.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대표이사,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에 관한 사항
 - 3. 기타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Article 11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 ①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select and recommend candidates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 ②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not less than three (3) Directors: Provided, however, that the majority shall be Outside Directors.
- ③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the Committee among its members who are Outside Directors.
- ④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resolve on the following matters.
 - 1. Recommending candidates for Representative Director,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 2. Managing a candidate pool for Representative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s and verifying the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recommending candidates and supporting management succession
- ⑤ A member of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shall not exercise his or her vote on a resolution for recommending the member concerned as an officer candidate.

제12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보고서의 확정
 2. 감사규정의 제정과 개폐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 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Article 12 (Audit Committee)

- ① The Audit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not less than three (3) Directors: Provided, however, that 2/3 of the total members shall be Outside Directors and at least one (1) member shall be an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 prescribed by applicable laws.
- ② One or more Outside Director(s) who will serve as Audit Committee member(s) shall be appointed separately from other Directors. An Audit Committee member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shall mee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cluding not falling under the disqualification criteria described in applicable laws.
- ③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the Committee among its members who are Outside Directors.
- ④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resolve on the following matters.
 1. Establish yearly audit plan and confirm the audit report
 2. Establishment, amendment and abolition of Audit Regulation
 3. Consent of Internal Auditor's appointment and dismissal
 4. Request for Extra 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and Extra Ordinary Board of Directors

meeting

5. Injunction for director's unlawful act
6. Other matters that entrus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needed by committee

⑤ A meeting of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hen the Chairperson deems necessary.

제13조 (리스크관리위원회)

-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회사의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Article 13 (Risk Management Committee)

- ①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not less than three (3) Directors: Provided, however, that the majority shall be Outside Directors.
- ②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the Committee among its members who are Outside Directors.
- ③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resolve on the following matters.
 1. Establishment of basic policies and strategies for risk management of the Company
 2. Determination of risk level affordable by the Company
 3. Approval of appropriate investment limit and loss limit of the Company
 4.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risk-related regulations
 5.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for risk management
- ④ A meeting of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hen the Chairperson deems necessary.

제14조 (보수위원회)

- ① 보수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1인 이상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 1.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관련된 사항
 -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수립
 -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Article 14 (Remuneration Committee)

- ① The Remuneration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not less than three (3) directors and at least one (1) member shall concurrently serve as a member of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 ②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the Committee among its members who are Outside Directors.
- ③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resolve on the following matters.
 - 1. Matters 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muneration system for the officers
 - 2.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muneration system for employees in charge of financial investment
 - 3. Matters on the preparation and disclosure of annual report on remuneration payment
 - 4.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ommittee
- ④ A meeting of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hen the Chairperson deems necessary.

제14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 ①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책무구조도의 작성 및 변경
 - 6.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
 - 7.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Article 14-2 (Internal Control Committee)

- ① The Internal Control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three or more directors, with the majority of members being outside directors.
- ② The Chairman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the outside directors by resolution of the Committee
- ③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resolve the following matters:
1.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basic policies and strategies
 2. Formulation of measures to establish a corporate culture that emphasizes professional ethics and compliance
 3.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Internal Regulation on Corporate Governance
 4.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Internal Control Standard
 5. Prepar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responsibilities Map
 6. Other matters prescrib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7.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Committee
- ④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Committee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ttee.
- ⑤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henever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제15조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는 이사회에서 주관한다.
- ② 평가지표는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평가 결과에 개선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향후 위원회 운영 시 반영하여야 한다.

Article 15 (Evaluation on Operation of Committees)

- ①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ach Committee at least once a year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Board.
- ② The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Committees shall ensure objective evaluation of the role, composition, independency and appropriateness of operation, etc.
- ③ Any evaluation result which indicates the need for improvement shall be reflected in the future operation of the Committee concerned.

제 3 장 이사, 임원 및 최고경영자

Chapter 3 Director, Executive Officer and Chief Executive Officer

제 1 절 이사

Section 1 Director

제16조 (이사의 자격요건)

- ① 이사(대표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선임된 후 이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사내이사(대표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선임하여야 한다.

Article 16(Qualification of Director)

- ① Directors (exclud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shall not fall under the disqualification criteria described in applicable laws and if they are found to be disqualified after being appointed, they shall be discharged from the position.
- ② The Company shall appoint Outside Directors who have expertise and knowledge in consideration of the matters describ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Sufficient working experience or expertise required to serve as Outside Directors in

relevant areas such as finance, business management, economy, law, accounting, customer protection, IT, etc.

2. Ability to perform the duties as Outside Directors fairly and independently from certain interests
 3. Appropriate sense of ethics and responsibilities to perform the duties as Outside Directors
 4. Available to spare sufficient time and efforts required to serve as Outside Directors
- ③ Inside Directors (exclud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shall be appointed among those who have considerable expertise and experiences required to perform the duties of Directors.

제17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가할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사내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 ③ 이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이사는 제3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간 일 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 ⑥ 이사는 재임기간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17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Director)

- ① Directors, as members of the Board,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 concerning the business of the Company and may demand data or information necessary to conduct their duties. In such cases, the Company shall respond to such a demand unless there are specific reasons to do otherwise.
- ② Inside directors shall conduct the duties as assign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③ Directors shall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internal regulations and conduct their duties faithfully as prudent managers of the Company.

- ④ Directors shall participate actively in the Board of Directors, etc. to ensure that the Company is managed in a legitimate and sound manner and, to that end, shall thoroughly review the meeting agendas of the Board of Directors, etc. in advance.
- ⑤ Directors shall spare certain hours per year for participating in the Board of Directors, etc. as prescribed by the Board of Directors in order to faithfully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under Paragraph (3) above.
- ⑥ Directors shall not disclose trade secrets of the Company to anyone during the term of office and after the retirement and shall not use such trade secrets for the interest of themselves or a third party.

제18조 (이사의 선임 · 퇴임)

- ①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관리중인 후보 군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후보군 이외에서 후보를 추천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사내이사인 부대표/수석부사장은 주주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18.11.26 개정)
- ④ 비상임이사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18.11.26 신설)
- ⑤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 1. 임기만료
 - 2. 사임
 - 3.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이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경우

Article 18 (Appointment and Retirement of Director)

- ① Outside Directors shall be appoin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 ②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shall, in principle, recommend a candidate for Outside Director among the candidate pool. If a candidate outside the pool is recommended inevitably, the Committee shall specify the reasons thereof.
- ③ Deputy CEO/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who concurrently serves as an Inside Director shall be elec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th the recommendation of Shareholders. (2018.11.26 Amended)

- ④ Non-standing director shall be elec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th the recommendat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 (2018.11.26 newly inserted)
- ⑤ Directors shall retire from offic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 1. Expiry of the term
 - 2. Resignation
 - 3. Becoming disqualified under the relevant laws
 - 4.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dismiss a Director for a cause that makes him/her inappropriate to maintain the Director's position

제19조 (이사의 임기 및 연임)

- 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고, 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을 합하여 9년 이상 재직할 수 없다.
- ② 재임중인 사외이사를 다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 ③ 사내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임중인 사내이사를 다시 추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Article 19 (Director's Term of Office and Consecutive Appointment)

- ① Outside Directors shall serve for up to two (2) years and may be reappointed for an additional consecutive term; Provided, however, that no Outside Directors shall not serve for six (6) years or more at the Company and nine (9) years or more in total at the Company's affiliates.
- ② An incumbent Outside Director may be recommended for the position again only when such a person has excell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 ③ Inside Directors shall serve for a term of two (2) years and may be reappointed for an additional consecutive term; Provided, however, that an incumbent Inside Director may be recommended for the position again only when such a person has excell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제20조 (이사에 대한 평가 및 결과활용)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역할, 책임, 참여도 등의 항목을 자기평가, 직원평가, 이사회 참여도 등을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는 연임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평가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사내이사의 경영성과 등을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내이사의 평가결과는 연임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성과보수 지급률 결정에 적용된다.

Article 20 (Evaluation on Director and Use of Result)

- ①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evaluate the performance of Outside Directors fairly at least once a year based on the results of self-evaluation, employee evalu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are conducted on items such as roles,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ion.
- ② The evaluation result of Outside Directors may be used for determining their reappointment and the evaluation and the result thereof shall be disclosed through the Annual Repor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Remuneration System.
- ③ The Remuneration Committee shall evaluate Inside Directors fairly at least once a year based on business results, etc.
- ④ The evaluation result of Inside Directors may be used for determining their reappointment and incentive rate.

제21조 (이사의 보수)

- ①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 회의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30조를 따른다.

Article 21(Remuneration of Director)

- ① Remuneration paid to Outside Directors and Non-standing Directors shall consist of basic remuneration, allowance for meeting attendance, etc. shall not be coupled with business results.
- ② For remuneration paid to Insider Directors, Article 30 of this Regulation shall apply.

제22조 (이사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신임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Article 22 (Education on Director)

- ① The Company shall provide education or training sessions on the Company's strategy, finance, accounting, risk management, etc. to new Directors.

- ② The Company shall prepare and operate educational or training programs for Directors.

제 2 절 임원 Section 2 Officer

제23조 (임원의 자격요건)

- ① 임원(등기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집행간부는 금융회사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rticle 23 (Qualification of Officer)

- ① Officers (excluding the Registered Offic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shall mee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cluding not falling under the disqualification criteria described in applicable laws.
- ② Executive Officers shall have considerable working experience at financial companies and 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business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 ③ Chief Compliance Officer,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and Chief Consumer Officer shall meet the positive qualification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제24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 ① 집행간부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업

무를 총괄한다.

- 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원은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24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Officer)

- ① Executive officers and Other Officers shall suppor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shall be in charge of the business as assigne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 ② Chief Compliance Officer shall check the compliance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supervise the internal control matters such as investigation into a breach, if any.
- ③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shall supervise the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isks arising from asset management, conduct of works and other various transactions.
- ④ Chief Consumer Officer shall oversee implementation of internal control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⑤ Chief Compliance Officer and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shall not conduct any duties prohibited by relevant laws.
- ⑥ Officers shall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internal regulations, conduct their duties faithfully as prudent managers of the Company and make report to the Board of Directors at the request of the Board.

제25조 (임원의 선임·퇴임 기준 및 절차)

- ① 집행간부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③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한다.
- ④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 1. 임기만료
 - 2. 사임
 - 3. 인사 관련 규정상 해직 및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Article 25 (Officer's Appointment and Retirement Standard and Process)

- ① Executive Officers shall be appoin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 ② Officers in charge of major businesses prescribed by the Corporate Govern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Officers in charge of major businesses") shall be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 ③ Chief Compliance Officer,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and Chief Consumer Officer shall be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 ④ Officer shall retire from offic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Expiry of the term
 2. Resignation
 3. When falling under the cases for dismissal and removal stipulated in the HR Regulation
- ⑤ Notwithstanding Paragraph (4) above, the dismissal of Officers in charge of major businesses shall require the presence of a majority of all Directors and an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Directors present. Meanwhile, the dismissal of Chief Compliance Officer and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shall require an affirmative vote of 2/3 of all Directors.

제26조 (임원 유고시 후임자 선임 등)

- ① 임원의 사임·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집행간부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후임자를 선임한다.

Article 26 (Appointment of Successor in Case of Incapacity of Officer)

- ① In cases where an Officer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resignation, accident, etc., a successor shall be appointed.
- ② In cases where an Executive Officer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ccident, etc., an acting officer shall perform the duties according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instruction and a successor shall be appoin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 ③ In cases where Officers in charge of major businesses, Chief Compliance Officer,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and Chief Consumer Officer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ccident etc., an acting officer shall perform the duties as instructed in advance by the Board of Director and a successor shall be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제27조 (임원의 임기 및 연임기준)

- ①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재임중인 집행간부를 다시 추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Article 27 (Officer' Term of Office and Consecutive Appointment)

- ① Executive Officers shall serve for a term of two (2) years and may be reappointed for an additional consecutive term;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recommends an incumbent Executive Officer, such a person shall have excell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 ② Officers in charge of major businesses, Chief Compliance Officer,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and Chief Consumer Officer shall serve for a term of two (2) years and may be reappointed for an additional consecutive term; Provided, however, that those who have excell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shall be eligible to be recommended for an additional term.

제28조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임원 및 부서장 등을 위해 교육 및 연수제도의 일환으로 경영관련 회의, CEO 관련 각종 포럼 및 경영자 위탁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임원 및 부서장 등이 제1항의 교육·연수 등을 이수한 경우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참고자료로 활용한다.

Article 28 (Education on Officer and Head of Department)

- ① The Company shall offer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management-related meetings, various CEO forums and commissioned education for Officers and department heads as part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 ② In cases where Officers and department heads complete the education, trainings, etc. under Paragraph (1) above, the results thereof shall be evaluated and used as a reference for personnel

affairs.

제29조 (임원에 대한 평가 및 활용)

- ① 임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성과평가의 방법, 절차, 지표는 임원의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 ③ 성과평가의 결과는 성과보수의 지급, 재선임의 결정 등에 반영한다.

Article 29 (Evaluation on Officer and Use of Result)

- ① The Remuneration Committee shall determine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Officers.
- ② Detailed evaluation methods, processes and indicators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each Officer; Provided, however, that a separate evaluation guidelines which are not coupled with financial performance shall be prepared for Chief Compliance Officer,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and Chief Consumer Officer.
- ③ The evaluation result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determination of bonus payment and reappointment.

제30조 (임원의 보수)

-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보수, 성과보수 등으로 구성된다.
- ② 성과보수는 보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며, 성과보수 중 일부는 3년간 이연 지급한다. 이연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보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Article 30 (Remuneration of Officer)

- ① Remuneration paid to Officers shall consist of basic remuneration and incentive bonus.
- ② Incentive bonus shall be paid in consideration of the evaluation results by the Remuneration Committee and part of the incentive shall be deferred over a period of three (3) years. Detailed methods of deferred payment shall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Remuneration Committee.

제 3 절 최고경영자

Section 3 Chief Executive Officer

제31조 (경영승계절차)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중인 후보군에 외부 자문기관 등에서 추천 받은 후보군 등을 포함하여 최종 후보군을 확정할 수 있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축소하고, 후보자를 결정하여 회사의 이사회에 통보한다.
- ③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 위원회는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추천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며 추천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공시한다.

Article 31 (Management Succession Process)

- ① In cases where the management succession process commences,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this Section) may determine the shortlist of candidates out of its candidate pool and the candidates recommended by external consulting firms.
- ②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shall review the candidates shortlisted, narrow the list and select a finalist to notify to the Board of Directors.
- ③ The candidate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at the Company’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④ The Committee shall make sure that the recommendation process is completed within forty (4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management succession process begins and in case of delay, the Committee shall announce the reasons thereof and future schedule immediately.

제32조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는 임기만료, 사임, 관련 법령상 자격상실, 해임 등 최고경영자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임기만료일 40일 전에 경영승계절차 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개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다.

Article 32(Reasons and Timing of Management Succession)

- ① The succession process for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hall take place in cases where the CEO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the expiration of term, resignation, disqualification under applicable laws, dismissal, etc.
- ② The Committee shall, in principle, commence the management succession process forty (40) day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the CEO's term: Provided, however, that the Committee may change the date on which the succession process begins if inevitable cases occur.
- ③ The Committee shall commence the management succession process immediately if a reason other than the expiration of term occurs.

제33조 (비상계획)

회사의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내이사인 부대표/수석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다.

Article 33 (Emergency Plan)

In case of an emergency such as the CEO's accident, etc., Deputy CEO/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who concurrently serves as an Inside Director shall perform the duties of the CEO and commence the management succession process.

제34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인사담당부서로 한다.
-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업무 지원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동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한다.

Article 34 (Department Supporting CEO Succession)

- ① HR Department shall support the management succession of the CEO.
- ② The department supporting the management succession of the CEO shall conduct the tasks describ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Support ongoing management of CEO candidate pool and verification of qualification
 2. Support the evaluation of candidates for the CEO position
 3. Other support necessary for CEO succession
- ③ The department supporting management succession of the CEO shall report the progress of the

businesses described in each of the subparagraphs above in Paragraph (2) to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제35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양측 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며 주주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Article 35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CEO)

- ① The CEO shall mee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cluding not falling under the disqualification criteria described in applicable laws such as the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 ② The CEO shall have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finance, share the vision of both shareholders and be ready to devote himself or herself for the public interest and sound management of shareholders.

제36조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 ① 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선정하여 후보군을 관리하며,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후보군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 회사의 이사회에 통보한다.

Article 36 (Recommendation Process of CEO Candidate)

- ① The Committee shall select candidates who mee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manage the candidate pool for an orderly succession of the CEO and may, in its search for potential candidates, use external sources such as shareholders, stakeholders, external consulting firms, etc.
- ② Once the candidate pool is confirmed, the Committee shall verify their qualifications fairly according to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select a finalist and notify thereof to the Board of Directors.

제37조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공시)

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

시한다.

1.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후보자 추천 이유 및 경력
6. 그 밖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Article 37 (Public Notice Concerning CEO Candidate Recommendation)

In cases where the Committee recommends a candidate for the CEO position, it shall make a public notice on matters describ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rior to giving notice of convening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 Overview of candidate recommendation process
2. List and biography of members of the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3. Committee member who recommended a candid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4. Fulfillment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under relevant laws and grounds thereof
5. Reasons for recommendation and candidate's work experience
6.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Board of Directors with respect to candidate recommendation

제38조 (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주주총회 소집권과 주주총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 ② 최고경영자는 직무권한의 일부를 직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위 직책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중장기적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정해야 하며,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최고경영자의 평가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최고경영자는 임기만료·사임·해임 등의 사유로 퇴임하며,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사 전원에게 사임의 뜻을 전달한다. 또한 해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Article 38 (Authority of CEO and Establishment of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 ① The CEO shall represent the Company, control the overall business and have the right to convene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authority as the Chairpers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② The CEO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duties to a lower position pursuant to the Regulation of Organization.
- ③ The CEO' term of office shall be determined for the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management and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and the CEO shall serve for a first term of two (2) years and may be reappointed for an additional consecutive term.
- ④ Matters related to the evaluation and remuneration of the CEO shall be governed by the Remuneration Committee.
- ⑤ The CEO shall retire on the grounds of expiration of term, resignation, dismissal, etc. In case of resignation, the CEO shall express the intention to resign at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deliver such intention to all Directors, whereas, in case of dismissal, a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required.

제 4 장 공시

Chapter 4 Disclosure

제39조 (정기공시)

- ①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024.10.31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 ③ <삭제> (2017.10.23 개정)

Article 39 (Regular Disclosure)

- ① The Company shall prepare the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and Annual Report on Remuneration System and disclose thereof twenty (20) days prior to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be held in the following year. (2024.10.31 Amended)
- ②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bove, in cases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etc. of the Company fails to disclose variable remuneration paid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in the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and Remuneration System during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above, such variable remuneration paid shall be disclosed additionally by the 15th of the following month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solution thereon was made at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etc.

③ <DELETED> (2017.10.23 Amended)

제40조 (수시공시)

-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이 규범을 개정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7영업일 내에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전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주주가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Article 40 (Ad-Hoc Disclosure)

- ① The Company shall disclose any appointment or dismissal (including resignation) of an Officer and, in case of appointment, the fulfillment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via its internet homepage without delay and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② The Company shall disclose any amendment to this Regulation via its internet homepage.
- ③ The Company shall disclose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the number of shares with voting right and the proportion of affirmative and negative votes cast per agenda, etc. via its internet homepage within seven (7) business days after the closing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④ The Company shall disclose when shareholders exercise their rights under the relevant laws.

제41조 (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Article 41 (Disclosure Method)

Disclosures required under this Regulation shall be made via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mpany and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제 5 장 기타

Chapter 5 Others

제42조 (준용규정)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Article 42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Matters not prescribed by this Regul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Regul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the Regulation on Officer Recommendation Committee, etc. of the Company.

부 칙(Addendum)

이 규범은 2016 년 10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28, 2016

이 규범은 회사 사규관리규정 제 2 조 제 2 항에 따른 규정으로 본다.

This Regulation shall be regarded as a regulation under Article 2 (2) of the Regulation for Management of Intern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of the Company.

부 칙(Addendum)

이 규범은 2017 년 1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23, 2017

부 칙(Addendum)

이 규범은 2017 년 2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13, 2017

부 칙(Addendum)

이 규범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23, 2017

부 칙(Addendum)

이 규범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14, 2018

부 칙(Addendum)

이 규범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26, 2018

부 칙(Addendum)

이 규범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December 29, 2021

부 칙(Addendum)

이 규범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May 24, 2022

부 칙(Addendum)

제 1 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4. 10. 31.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승인하는 때부터 시행 한다.

Article 1 (Effective Date) This regulation shall come into effect from the time the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approved at the company's shareholders' meeting to be held on October 31, 2024.

제2조(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적용시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회사가 최초로 책무 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때부터 적용한다.

Article 2 (Effective Date of the Obligation to Manage Internal Controls, etc.) The amended provision of Article 6(1) shall apply from the time the company first prepares and submits the Responsibilities Map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